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직원 여러분 !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작년도 종무식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또 다시 종무식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눌 수 없는 시간에 금을 그어 놓고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인위적으로 하루, 한 달, 일 년으로 나누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지난 일을 묻고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늘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 라고 하지만 올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국민을 희망에 설레이게 하였다가 큰 실망을 안겨준 황교수 사건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연구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 연구원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의 통합으로 산하연구기관이 23개로 늘어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연구기관들이 한 틀 속에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기



이 태 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관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협력의 기회도 넓어지고 선의의 경쟁도 치열해지게 되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 하던 최정구 행정실장 후진을 위해 용퇴하고, 정완, 김성언, 박정선 박사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

를 기원합니다. 오래 된 분들과의 아쉬운 헤어짐도 있었으나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3월에 4명, 12월에 6명의 연구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고 구성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인적 자원의 보완을 통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이 국내에서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은 우리 연구원이 유엔 형사사법 연구기관 가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협력이 본격화된 한 해였습니다. 지난 4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11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총회에서 컴퓨터범죄위크샵을 성공적으로 주관함으로써 우리의 역량

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 밖에 유엔 형사사법위원회의 회의, 세계범죄학대회를 비롯한 중요 회의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제 우리 연구원이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의 하나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세계에 제대로 우리를 알리기 위해 영문명칭도 KIC(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에서 KICJP(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로 바꾸어 우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부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샘 휴스턴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국내적으로도 법무연수원, 경희대, 성균관대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술협력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여 범죄학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의 Hirschi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저명한 미국형사소송법 학자인 샘 휴스턴 주립 대학교의 Carmen교수를 초청하여 ‘인신구속제도와 무죄추정원칙’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연구원의 비전을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적 형사정책 연구기관’으로 정하고 사명과 목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표장(엠블럼)을 제정하여 연구원의 상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여 내년 초에는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연구원의 구성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연구원의 통합의 상징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의 혁신을 위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정책수요분석팀, 연구경영혁신팀 등을 만들어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사업의 선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연구사업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하여 불필요한 일들은 과감히 줄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직원들의 뜻이 반영되고 신명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연구원이 연구회의 기관평가에서 1위를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회의 기관평가가 시작된 이래 하위권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여 지난 해의 2위에 이어 금년에 드디어 1위에 올라서 더욱 뜻 깊은 성과라 생각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은 처음부터 1위를 한 것 보다 더욱 훌륭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

이런 일들은 모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연구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의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형사정책연구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임할 때 우리의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에 대해 겸허히 각자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 !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잘 된 것은 더욱 북돋우고, 잘못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봄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모인 ‘조직’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하나하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인화’가 강조되는 것도 사람들 사이의 화합을 통해 각자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연구원의 조직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특성상 비판에 능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익숙합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정신 없이는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잘못을 고치지 못하게 되어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지나치면 인화를 해치고 스스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을 부각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잘 하기는 힘이 듭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

이제 건전하지 못한 비판문화를 건전한 비판문화로 바꾸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조직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실장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실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장의 직을 수행하도록 하여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도 위험하지만, 냉소적인 자세와 방관자적인 자세는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장점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연구원이 즐거운 직장이 되고 서로의 얼굴이 천사로 보일 것입니다. ‘연구는 비판적으로, 그러나 인간에게는 따뜻하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

예전부터 해가 바뀌는 날을 ‘愼日’이라고 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삼가는 날로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

지난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즐겁고 보람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2005. 12. 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이 태 훈

진료기록부의 위·변조 원인과 그 대책

1. 논의의 배경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진료기록부이다. 이러한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어떤 진료와 치료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료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면

서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에 요양비나 진료비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이기도 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로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객



조 광 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관적으로 기록하는 자료라는 면에서 보면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생명권·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진료기록부의 작성에 세밀하고 성실한 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의사가 이런 기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환자를 위하여 신뢰감과 인술을 베풀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의료과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더

나아가 사법기관의 의료과실의 입증활동을 방해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진료기록부의 위·변조행위가 분명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별다른 형사제재를 받지 않은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진료기록부의 위·변조행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논의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¹⁾

1) 기존에 의료소송,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을 주제로 다른 글들은 많이 발견되지만,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을 다룰 뿐이고 의료과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글들을 찾아 볼 수 없어 논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2. 진료기록부의 개념과 기능

가. 진료기록부의 개념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료법에 의하여 환자의 병명·질병의 증상·치료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사실관계의 문서를 말한다.²⁾ 모든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성방법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자유이지만 의사의 의료행위 이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³⁾ 그리고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행위의 입증자료일 뿐 아니라, 환자치료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필히 작성되어야 한다.

나. 진료기록부의 기능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

에 의하여 의료인은 작성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 17조에서는 진료기록부에는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 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진료의 개시로부터 진료가 끝날 때 까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할 때 마다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처럼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지운 이유는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기록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는 주관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며 더욱이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인 의료기술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의료행위를 상세하고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의료행위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환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주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는 의료과실⁴⁾이 있을 때 그 책임의 유·무를 밝히고자 함에도 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에서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

- 2) 진료기록부는 보통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일컫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료기록부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료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한 경우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이라고 해야 하므로 진료부, 진료록, 진료경과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이학요법검사결과지, 방사선촬영결과지, 각종검사결과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여 환자의 진료에 관한 기록의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의사가 작성한 협의의 진료기록부(진료차트)에 대한 위·변조의 원인과 대책을 살피는데 중점이 있다.
- 3) 대판 1997.8.29. 97도1234; 대판 1998.1.23. 97도2124; 김민중,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002), 210면.
- 4) 의료과실은 판례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료행위에서 의료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의료과실의 대부분은 의료사고를 전제하고 있으나 의료사고라고 하여 반드시 의료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과오는 의료과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다툼을 말하고, 의료소송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소송을 말한다. 그리고 의료소송은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발생한 민사소송을 말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다루는 형사소송 및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직접 다루는 행정소송이 이에 포함되기도 한다.

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문서의 성격을 갖지만 진료기록부의 부실기재나 위·변조 등의 모든 흠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경험한 기억을 보조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환자의 진료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직접적인 도구가 된다. 그리고 의무기록을 통하여 임상경험과 의학지식의 축적, 연구의 수행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병원과 의료인, 환자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⁵⁾ 진료기록부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과 치료하는 기능이 있고, 환자에 대한 치료의 근거와 치료에 대한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료분쟁이 되었을 때 의료과실의 유·무와 판단하는 기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형법상 문서의 위조·변조

가. 문서의 위조

문서의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자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명의를 모용 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⁶⁾ 위조의 유형으로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와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무형위조가 있다. 여기에서 권한 없는 자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는 자를 말하므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도 진료기록부의 위조의 태양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작성인이 위탁된 범위를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조가 된다. 그러나 명의인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위조라고 할 수 없다. 위조의 방법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완성하거나 별개의 독립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로 보아야 한다.⁷⁾ 위조의 본질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 하는데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가필·첨삭·변개하는 행위를 위조로 볼 것인지, 변조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기 전에 일반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의 위·변조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정규원,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 『정보법학(제6권 제1호)』, (2002.7), 8면.

6)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로는 위임장,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탁증서, 예금청구서, 대출금청구서, 차용금증서, 영수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인감증명교부신청서 등이 있으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는 추천서, 인사장, 안내장, 이력서, 단체의 신분증, 진료기록부 등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7) 이재상,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4), 540-544면;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721-725면.

나. 문서의 변조

문서의 위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한 없이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할 권한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변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조가 되지 않는다. 변조는 기존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행위만 변조가 되므로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변조의 대상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한하므로 이미 위조된 문서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는 변조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조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또한 자기 명의의 문서일 것을 요하므로 자기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문서 손괴죄에 해당할 뿐이다.⁸⁾ 이와 관련하여 의사가 자신이 명의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는 행위가 주로 이용되는 것은 문서 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형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4. 진료기록부의 위조와 변조

가. 진료기록부의 위조

진료기록부의 위조의 형태는 대부분 의사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처음부터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추후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로 작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무형 위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진료기록부의 위조는 의사가 자신이 작성 권한을 가지고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형사책임을 지려면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의사가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사실은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료한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을지라도 그 작성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되기만 하면 형법은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하고 있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의사인 경우에는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중대한 입법적인 불비로 나타난다.⁹⁾ 그러나 진료기록부의 위조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과실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므로 진료기록부의 위조 행위가 의사(피의자·피고

8) 이재상, 앞의 책, 544-546면 참조.

9) 국·공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 의사인 경우에는 형법상의 문서위조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인·피고인)에게만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¹⁰⁾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의 부실기재의 행위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극히 미약한 형사제재를 하고 있고,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나 15일 이내의 자격정지라는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처벌규정에 머물러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더욱이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행위는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행위보다도 비난가능성이 매우커서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함에 있어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부당·과다 청구하는 정도가 지나쳐 그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로만 다스릴 뿐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지도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위조하여 보험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진료기록부의 위조는 자신의 명의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다른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작성은 명백한 유형위조이므로 처벌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자신의 의료과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위조하는 경우가 많고, 요양비, 진료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전부 위조하거나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위조가 부실기재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해 보려는 의도에서 추후에 가필·정정·삭제하는 방법으로 위·변조의 행위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나. 진료기록부의 변조

주로 문제되는 것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변조(변작·변개)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와 의료분쟁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진료기록부의 일정한 내용을 가필·정정·삭제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환자에게 의무기록사본을 복사해 주는 행위, 또는 건강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을 허위·부당·과다 청구하고 지급받기 위하여 변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 또한 위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입법적인 불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는 스스로 자신의 과실의 원인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료기록부를 제출하기 전에 진료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문자나 내용을 가필하거나 기존 문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진료기록부

10) 서울지법 1996.2.21. 94가합42029; 서울지법 1996.4.17. 93가합63881.

의 변조도 위조와 마찬가지로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진료기록부를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스스로가 추후에 진료기록부를 변조하여도 문서 위조죄의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은 위조와 마찬가지로이다. 더욱이 의사가 의료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하였더라도 환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¹¹⁾ 의료분쟁의 핵심이 되는 진료기록부를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사는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또는 어떤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쟁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변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최초 환자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진료기록부에 충분한 여백을 남겨 놓고 기재하는 것은 추후에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가필의 방법으로 위·변조의 여지를 쉽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5.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의 원인

가. 의료과실의 은폐를 위한 자료 확보

‘의료사고’란 다른 말로 ‘의료과실’이나 ‘의료과오’라고도 하는데, 의료과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 의료·조산·간호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기인한 환자와 의사 또는 병원간의 의료분쟁(의료소송)은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늘고 있다.¹²⁾ 의료분쟁은 다양한 원인¹³⁾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사(또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의사와 환자가 원만한 합의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끝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의료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송의 본질은 대부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과실의 유·무가 핵심이지만, 실제로 민·형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게 드

- 11) 의사는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기준에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부실하다고 보여 지면, 기준의 내용을 두 줄을 긋고 위·변조하더라도 이를 그 당시에 잘못 기재하여 정정하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위·변조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에 맞추어 간호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도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변조의 주관적 범의를 밝히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12)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에서는 일단 고소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사소송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느끼는 때문이고, 의사의 형사처벌을 통하여 심리적인 압박으로 보상심리의 충족을 꾀하려는 정서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업무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2-5% 정도 밖에 되지 않고 90% 이상이 ‘혐의 없음’ 처리되고 있다.
- 13) 현대사회는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사와 환자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의료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국민들의 의료혜택이 일반화로 환자의 증가, 다양하고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자들의 지나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예측불가능성의 내포, 의사와 환자는 단순한 의료계약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신뢰감 상실, 환자들의 권리의식의 신장 등도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러나는 경우보다는 의사의 과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사는 자신의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존에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료과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입증을 방해하는 활동과 더불어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으로 제1의 의료과실에 이어 제2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것은 추후에 민·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입증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어 불리해 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의료과실의 특성상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과실을 밝히기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료기록부의 위·변조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에 봉착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진료비 등 허위 청구 자료 이용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원인 중에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진료비·보험료를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실제 입원일수보다 입원일수를 늘리거나, 세부적인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허위·부당·과다 청구하는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다.¹⁴⁾ 이런 현상은 종합병원보다는 개인병원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사들의 도덕적인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숭고한 인류애로 헌신과 봉사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의료행위와 환자를 하나의 상품이나 재화의 객체로만 여겨,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상업 활동을 추구하는 점에서 도덕성을 상실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료나 기타의 보험료의 인상으로 가져와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의사들은 잘 알면서도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자 진료기록부의 위·변조 행위

14) 실제로 진료한 일수보다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입원일수를 늘려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통원 치료 환자를 입원 치료한 것처럼 위조하는 방법,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단과 공모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위·변조하는 방법, 실제 처방한 주사 약제를 간호사가 투여(실시)하지 않았으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보험수가가 높은 주사 약제를 투여한 것처럼 위·변조하는 방법, 의사가 환자를 진료 처방하는 것과 다르게 의료보조인 등이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물리치료(이학요법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를 상대로 물리치료를 실시하거나 횡수를 늘리는 방법, 투약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 심전도 검사 및 방사선 촬영을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인(간호사, 간호조무사)이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현상이 비일 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특성상 암수가 많아 수사기관에 쉽게 인지되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를 널리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사들의 진료기록부의 위·변조행위가 분명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에 대한 대책

가. 의료법에 형사처벌 근거 마련

의료법에 의사의 진료기록부의 위·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론이 요구된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를 위반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는 매우 미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¹⁵⁾ 그리고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하면서 그보다 책임이 더욱 무거운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조속한 보완 입법이 요구된다.¹⁶⁾ 그리고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서도 허위진단서 작성죄 이외에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인이 자기 명의의 문서를 위·변조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허점을 의사들이 충분하게 악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면에서도 의료법에 반드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민·형사소송에서 의료정보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까지도 왜곡하려고 진료기록부의 위·변조라는 행위를 국가와 사회가 방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적 정의와 규범성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 제21조의 처벌 규정(의료법 제69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이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예를 들어 같은 법 제21조의 3 (진료기록부 등의 위·변조 금지) “누구든지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형법상 처벌 조항 강화

1) 증거인멸죄의 적용

우리 형법 제155조에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15) 진료기록부의 부실기재 행위도 매우 모호하여 어느 사항을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아야 부실기재인지 명확한 것도 아니어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지는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16) 범경철, 『의료분쟁소송 -이론과 실제-』, 법률정보센터, (2003), 102면 참조.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인멸죄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인멸죄는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에서 위증죄와 그 본질을 같이하며 증거의 완전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므로 자기증거인멸은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때에는 증거인멸죄의 성립을 긍정하여야 한다.¹⁷⁾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임을 요하므로 민사·행정 또는 선거사건에 대한 증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사건이면 피의 사건이나 피고사건을 불문하고 모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인 이상 수사개시 전의 사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¹⁸⁾ 여기에서 은닉이라는 증거의 현출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위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계되는 새로운 증거를 작출 하는 것이며, 변조는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여 허위의 증거를 변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를 ‘위조’ 한다 함은 증거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진정

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사가 자신의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고,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행위 태양에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위·변조한 진료기록부를 증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형사사건이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행위 객체 추가

허위진단서등작성죄는 의사·한의사·치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죄이다.¹⁹⁾ 본죄의 행위는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유형위조와는 달리 작성 명의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형법은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지만, 의사·한의사 등이 작성하는 문서는 직업의 전문적 성격으로 인해 신뢰성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벌하려는 것을 입법한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진단서 등의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본죄는 진정 신분범으로서 본죄의 주체는 의사·

17) 대판 1965.12.10. 65도826; 대판 2000.3.24. 99도5275.

18) 이재상, 앞의 책, 748면; 대판 1982.4.27. 82도274.

19)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이다. 행위의 객체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이며 이를 허위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작성하는 것이다.²⁰⁾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과 허위기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한다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²¹⁾ 그러나 의사가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²²⁾

여기에서도 진료기록부는 진단서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의 행위가 분명한 범죄행위임에도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의 행위 객체의 대상에 진료기록부도 포함시키는 입법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진단서 등의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진실한 기능

을 하도록 담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진료기록부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병명·질병의 증상·치료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진단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공공의 신용의 기능은 비록 환자가 진료기록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서이므로 그 작성에 있어서도 신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사실의 증명을 위한 진실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³⁾

다.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권 등의 강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에 대한 대책으로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나 이를 수록한 진료기록은 의사의 전유물에 속한다는 생각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환자는 의사가 지배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법관이 직접 진료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

20) 오영근, 앞의 책, 752면.

21) 대판 1976.2.10. 75도1888.

22) 대판 1955.7.15. 4288형상74.

23) 허위진단서작성죄의 행위객체에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행위는 의사마다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같은 증상이라도 치료행위는 환자의 증상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의사의 주관적인 선택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증상, 병력,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 등의 항목만이라도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

서 진료기록에 대하여 보전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환자·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의료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6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로 자신을 진료하고 치료한 진료기록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소송이 계속 중일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에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열람·사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열람·사본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의사 등이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첨삭(가필·변경·삭제·정정)하거나 새로운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여 열람·사본에 응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를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사본의 교부 등의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환자로 의사의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과실의 특성상 형사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거증책임을 어느 정도 피고인에게 전환하거나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민·형사소송에서도 의사가 검사의 입증활동과 법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의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였다면 검사(또는 환자가 원고일 경우 환자)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의사(피고)에게 입증책임의 전환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실제로 의사의 입증방해의 행태²⁴⁾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입증방해는 의료소송에서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의사의 의료과실을 추정하는 결정적인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²⁵⁾ 독일의 판례도 X-ray의 사진을 제출하

24) 의료과실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수술에 사용한 거즈를 폐기하는 행위(검증물), 방사선 필름의 폐기(감정물), 검사결과지의 폐기(감정물 또는 증거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등을 해고하는 행위(인증), 진료기록부의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등 서증, 인증은 물론 검증 및 감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 않은 경우(BGH. V. 6.11. 1962)와 X-ray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경우²⁶⁾는 법원에 대한 입증방해활동으로 보고 있다.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독식하여 편중되어 있어 의료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의사가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는 오진에 의한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적극적인 입증방해활동으로 간주하여 의사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²⁷⁾ 따라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위·변조하는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소송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검사나 법원의 입증방해활동으로 보는 것도 당연하다.²⁸⁾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의사의 입증방해가 있었다면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고(의사)의 의료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이용되어야 한다.²⁹⁾ 원고(또는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민·형사소송법상의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간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와 실제적 진실발견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의 이

상에 반드시 어긋난다고만 할 수 없다. 이는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인정하려는 판례의 취지와 그 궤도를 같이 하게 된다.³⁰⁾

마. 진료비 등 지급 시 심사 강화

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 등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 요양료, 보험료에 대한 의료심사와 진료비의 지급에 대한 적정성의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비, 치료비, 보험료의 지급에 있어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병원(특히 개인병원)에서 진료비를 허위·부당·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체제로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고자 하는 동기를 사전에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보통 병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지급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할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함에 있어 의사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음에도 진료비의 청구는 의사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명하여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나 의사의 의료행위를

25) 대판 1993.11.23. 93다41938; 1995.3.10. 94다39567; 대판 1999.4.13. 98다9915.

26) OLG Frankfurt am Main v. 6. 9. 1934.

27) 대판 1995.3.10. 94다39567; 대판 1995.2.10. 93다52402; 부산고법 1996.7.18. 95나7345.

28) 김민중,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5), 623면.

29) 대판 1995.12.5 94다57771; 대판 1996.6.11. 95다41079.

30) 진료기록부의 부실기재를 의료과실로 인정한 판례로는 대판 2001.9.14. 2001다31547(두부손상을 입은 환자가 주사수액을 투약 받은 후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고 폐부종이 초래되어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과 서울지법 2001.7.11. 99가합36250(폐결핵, 결핵성, 농흉치료를 위하여 개방창형성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창을 봉합하는 개방창폐쇄술을 받은 후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이 있다.

보조한 의료보조인(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만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의사들의 빼놓아진 비도덕적인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손해보험회사 등을 비롯한 진료비, 보험료 등을 지급할 기관에서 병원의 진료비 등의 지급함에 있어 의료심사를 강화하여 진료기록부의 위·변조를 통한 진료비의 편취라는 일반화되어 있는 범죄 행위를 조금이라고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논의의 정리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분쟁이 격증하고 있고,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의사들의 의료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과실에 대한 대응곤란, 의료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의료혜택의 일반화 등은 의료분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기록부의 위·변조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비도덕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진료기록부의 위·변조는 의사의 한사람의 범죄행위를 벗어나서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의 위·변조를 자신의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허술한 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큰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의 행위는 단순히 환자

와 의사, 의사와 사법기관(수사기관)의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하고 환자들의 치료를 받을 권리보장을 위하여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의사들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의 작성이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는 환자와 의사를 연결시켜 주는 믿음의 문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은폐하고 의료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고 이를 조작하기 쉬운 문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료과실의 원인을 솔직하게 드러내 주고 명확한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중요한 자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세하고 있는 그대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사들은 아픈 환자들을 인류애로 구원하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숭고한 사상을 상기하고 회복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안정된 직업이나 명예, 금전욕만 추구하고 사로잡혀 환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또한 입법적으로는 진료기록부의 부실하게 기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진료기록부의 위·변조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심신장애자 판정의 문제점과 비교법적 검토

1. 현행 형법이 제정된지 이미 50년이 넘었다. 일부 규정들은 꾸준히 비판되고 부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0조의 책임능력 규정은 한 번도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조항이 과연 현대사회에서 점차 문제화되고 있는 심신장애자들의 이상 행동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원칙의 준수와 형법상 책임관련 조항들의 실질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10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며(구체화), 더 나아가 형법의 지시적 확실성(명확화)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행위가 심신장애이며 심신미약행위인지를 좀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이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화 작업을 통하여 정신이상자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규범적 처리의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2.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책임능력이



신 동 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전제된 고의 또는 과실행위만이다. 이 경우 전제되는 책임능력은 책임귀속의 또 다른 전제가 된다. 책임귀속을 위하여 형법이 직접 밝히고 있는 기준은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기준은 결국 형법상 책임관련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통하여 밝혀져야 하는 소위 ‘의미충전필요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제10조 제1항에 “心神障礙로 인하여 사물을 辨別할 능력이 없거나 意思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언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 평가에서 심신장애 상태를 기초로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만 평가한다면 심신장애는 정신장애(精神障礙)와 동일한 의미이다. 형법상 心神이란 단순히 마음(mind)을 의미하며, 심신장애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 형법상의 본문과 다르지 않다. ‘심한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사전적 의미”의 심신장애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심신장애 또는 정신장애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물론 ‘심신장애’라는 용어 역시 전문 용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심신장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우리 형법 제10조의 규정은 책임무능력행위에 대해서 생물학적-심리학적 혼합 표지인 ‘심신장애’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심신장애 개념은 좀 더 전문화된 생물학-정신의학적 개념으로 대체되면 어떨까 생각한다. 지금의 형법 제10조는 실질적으로 형법상 책임귀속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책임능력에 대한 법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데도 부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어떤 기준이 형법적 책임감면을 결정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형사절차에서 감정유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발견하기 힘들다. 예컨대 어떤 행위자가 심각한 정신병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정신의학적으로 질병의 차원이라면, 형사소송법상 감정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감정의 결과에 따른 정신병의 유/무가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책임감면되기 위하여 그 능력의 유무는 형사소송법적 입증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처럼 예를 들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된다면, 형사소송법상 감정은 여전히 임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실체법인 형법을 구체화시키는 절차라면 정신감정에 대한 현행 실무상의 태도는 소위 구체적 대상없는 절차를 명문화시킴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3. 독일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법과 매우 유사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무적인 관점이나 규범체계상으로는 상이한 점이 일부 발견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형법에 규정된 책임능력평가 조항의 구조 및 체계가 우리와 다르고,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관련된 규범구조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또한 독일 형법은 책임무능력에 대한 이해에 언제나 독일 형법 제55조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제64조의 보안처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 형법상의 책임능력조항은 단순히 형벌의 감면조건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독일 형법 제20조의 규범구조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서 i) 병리적인 정신 장애, ii) 심각한 의식장애, iii) 정신미약, iv) 기타의 심각한 정신이상이가 고려되고 있으며, 심리학적 요인은 이와 다른 측면에서 평가의 문제로 구성된다. 즉 생물학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이 경우는 감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책임무능력이 강하게 추정되는 반면, 심리학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의 경험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기준삼는 것은 우리 형법 제10조의 문언과 유사하게 ‘불법을 변별할 능력’(das Unrecht der Tat einzusehen) 또는 ‘통찰력’(Einsichtsfähigkeit)과 같은 내용이다.

이러한 심리학적인 요인들은 사실 법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역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불법의식의 부존재가 책임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착오의 문제인지가 애매해진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독일 형법상 책임무능력은 규범

구조상 생물학적, 또는 기질과 관련된 요소로서 심신장애와 그와 기질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판단상의 하자로서 인한 심리적 요소를 책임무능력 평가의 이중적 평가대상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독일 형사판례의 실무적 경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정신장애는 대체로 감정의 결과에 귀속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보호관찰의 범위와 치료감호 여부를 심리한다. 둘째, 성격결함이나 자초한 심리적 공황상태 유발은 형사책임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정신적인 결함은 독일 형법상으로 제20조의 책임무능력의 규범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독일 형사실무의 태도이다.

4. 미국은 책임무능력에 대한 매우 다양한 규범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형법상의 책임무능력은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infancy*), 정신이상자의 책임무능력(*insanity*), 무의식적 행위(*automatism*), 명정행위(*intoxication*)로 구분된다. 여기서 다룰 것은 정신이상자의 책임무능력, 즉 형법상 *Insanity*에 대한 미국형법상의 이해이다. 우리가 미국 형법의 기본적인 모델로 이해하는 1962년 모범형법전은 “행위시에 정신병이나 이상증세로 인하여 행위의 잘못됨이나 법에서 요구된 행위를 준수할 근본적인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형법과 구조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 규정을 독일 형법이론과 유사한 맥락에

서 설명하는 우리의 경우와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지이다. 미국 모범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근본적인 능력’(substantial capacity)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는 ‘법의 요구’(the requirements of law)를 우리 형법상의 금지작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형법적용의 실제에서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미국형법상 책임무능력 상태에서의 범죄행위는 독일 형법과 달리 범죄자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정신장애자의 책임무능력 행위는 주로 소송능력결여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상태’(insanity)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범죄행위시에 정상적인 이성이 갖추어지지 못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고 파악한다. 이 설명을 따르면, 우리 형법이나 독일 형법과 같이 책임무능력자의 책임결여기준을 규범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자를 소송무능력 또는 변론무능력자로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을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파악한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정신이상자의 범법행위는 의학의 대상이지 형법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한다.

수많은 비판과 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맥나튼 룰은 현재까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차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책임무능력자라는 사실을 다투게 되는 경우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영미법상의 원칙은 물론 우리의 경우와 같이 모든 범죄사실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책임무능력을 변론의 근거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자신의 행위

가 정신장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나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맥나튼 기준이 구체화로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맥나튼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 i) 정신병(Disease of the Mind),
- ii) 의사결정능력의 결여(Defect of Reason),
- iii) 행위의 내용과 성질(Nature and Quality of the Act),
- iv) 행위의 불법성 인식(Knowledge that the Act is Wrong),
- v) 정신이상적 망상과 저항할 수 없는 충동(Insane Delusions and Irresistible Impulses).

맥나튼 룰과 함께 국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더램 룰은 사실 미국내에서 잠시 동안만 판례에서 원용되던 기준이다. 더램 룰이 폐지되면서 맥나튼 룰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바로 미국 법학회 기준(American Law Institute Test - 소위 ALI Test)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기준은 현재 미국 모범형법전에 구체화된 책임무능력 판정 기준이다. 이 기준은 실제로는 맥나튼 룰의 구체화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독일 형법에서 취하고 있는 생물학적 기준과 심리학적 기준의 이중적인 복합기준과 유사하기도 하다.

미국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신질환자를 법원의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에 감금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거쳐 심사를 통해 자유회복을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 구금시설에서의 재활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생기고 있다.

5. 현재 일본 형법상의 책임능력규정은 우리 형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일본 형법 제39조 제1항은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라고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2항은 “심신모약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대부분 독일 형법이나 우리 형법에서 설명하는 ‘생물학적-심리학적 표지’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본학자들이 설명하는 형법 제39조의 실질적인 의미는 독일 형법상의 규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간단히 정리하면 정신의 장애를 생물학적 표지의 예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비변별능력의 결여’와 그로 인한 ‘행위 억제능력의 감퇴’ 등을 심리학적 표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약간 겉으로 보면 다소 의외적이다. 일단 형법 제39조 본문의 어느 구절에도 시비변별능력과 행위억제능력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일본 학자들의 주장처럼 일본 형법상의 책임능력규정이 생물학적 표지와 심리학적 표지 모두를 포함한다면, 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본문과 유사하게 규정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형법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제39조에서 책임무능력의 다양한 양태들을 해석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혀 규정상으로 등장하지 않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사항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

정은 일본 형법의 색다른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형법 제39조의 문언상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책임무능력을 규정한 제39조의 해석에서 생물학적 표지와 심리학적 표지를 혼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으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본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6.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개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시하는 ‘심신장애’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 형사소송법 제169조의 감정이 형법상의 책임무능력 판정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책임능력평가를 위하여 어떤 기준을 가져야하는지가 모호하다.

형법의 책임능력 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형법 이론과 형사실무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형사실무의 다른 정책적인 고려가 변수로 작용해서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소개된 형법이론서는 거의 예외없이 독일이나 일본 형법이론에서 소개된 방식에 의거하여 책임무능력과 책임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소위 “생물학적-심리학적 혼합방식”은 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의 문언과 함께 이견없이 설명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 표지가 실무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는 모호하다. 판례의 경우도 어떤 기준으로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하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기준들은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힘들다. 여기에는 형법이론에서 제시하는 생물학적 기준과 심리학적 기준이 어떻게 형사실무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가 법규정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유도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심신장애에 판정을 위한 형법 제10조 규정의 구체화이다. 법 문언에서 명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세와 심리적 증세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 사유가 명시되고, 감정에 의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곧바로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치료감호나 정신병원에 구금 등을 명령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별요건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감정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입법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감정에 대한 사항은 전문감정과 일부 비전문감정이 구분 없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게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감정의 새로운 입법과 그 감정결과의 일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위상을 고려할 수 있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 검토될 수 있다.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하여는 성범죄 자체의 피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를 도외시한 종래의 형사사법 절차는 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 유발과 아울러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까지 가지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방법의 발견이 쉽지 않는 이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은 더욱 크지만, 진술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된다. 종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 인해 피해자인 아동의 보호는 커녕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소도 적지 않았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황 만 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사회 일반의 관심의 증대와 아울러 그동안 경시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최근 중요한 논의과제로 등장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자화의 문제점이 새로이 부각되면서 2차 피해자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입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최근 성폭력특별

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진술의 비디오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아동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보호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외부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증거법상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도입된 비디오 진술 녹화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와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아동진술의 비디오녹화는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나 공판중심주의의 형사법상의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수사절차의 개선방안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사람이 경찰이므로 경찰에서의 진술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 수사 담당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는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성폭력사건 관련 실무지침이 경찰과 검찰에 존재하지만, 수사 담당자들의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침과 현행 실무와는 괴리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많이 호소하는 고통 중의 하나가 수사 기관에서의 잦은 소환이다.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의 제공자이긴 하지만 잦은 조사 및 소환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사관은 피해

자의 출석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체수단에 의한 증거수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사자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 중에서 모든 요소들, 즉 당해 아동이 선호하는 조사자의 성별, 조사 경험, 아동과의 사전 경험 및 최선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가능성, 아동조사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조사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하고 이들은 법체계나 증거법상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당해 아동의 언어 이해력 및 아동의 필요사항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동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resources)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아동을 많이 대하였다는 경험만으로는 아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아동조사기법의 연구와 아동조사과정의 훈련, 수사실무와 관련한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전문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성과를 지침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조사는 아동의 기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전문적 과정이므로, 수사경찰관 단독으로 아동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아동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겠다. 조사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아동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아동이나 보호자와의 상담결과에 따른 조사장소, 조사절차, 특히 조사과정의 녹화 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아동조사에 대한 여러 위험 요인들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조사의 위험

를 최소화할 도모할 수 있다. 조사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기록에 편철하고 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조사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계획 수립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서, 아동의 연령 및 성별, 아동의 인지능력(주의력과 기억력 등), 언어능력(이해력, 어휘력 등) 및 행동범위, 현재의 정서적 상태, 전문가의 투입 및 주의를 요하는 정신적·육체적 및 학습적 손상 여부를 들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가족구성 및 생활환경, 아동의 일상생활, 수면, 영양상태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아동보호기관과 관련된 전력, 만일 있다면 그 경위, 이미 취하여진 사전보호조치나 지원의 세부사항(치료나 상담 등), 기타 정보의 원천(부모, 보호자, 의사, 상담기관 종사자, 교사 등)에 대한 조사도 수반되어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진술을 녹화해야 하므로 아동조사실에 녹화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얼굴표정, 몸짓이나 태도 등)이 정면에서 녹화될 수 있어야 하고,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양질의 상태로 녹음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성폭력법 제21조의2 제2항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당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있기를 바라거나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시 동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조사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조사시 동석함으로써 아동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조력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 질문에 답하거나 아동이 특정한 것을 말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몸짓언어나 얼굴 표정으로도 아동에게 어떠한 감정이나 의도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자의 범위나 동석시의 행동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석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자격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이를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지, 상담기관의 상담원 등이 이에 당연히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성폭력법 제21조의2 제4항에 의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한 경우 조서 작성 여부, 작성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작성 후 조서에 날인할 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본 비디오테이프는 증거물이므로 다른 증거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이 필요한 때가 있다. 사본의 작성과 교부는 피해자인 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비디오진술 녹화 테이프를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시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본을 주는 것보다는 검찰이나 법원의 일정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본을 만드는 경우에도 사본테이프의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의 의도적인 일부 촬영이나 의도적 편집을 막기 위한 절차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도적인 부분 촬영을 막기 위해서는 녹화장치에 사후 수정이 불가능한 시간 표시방법을 기술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아동증인들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의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적어도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경과한 후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지연은 아동증인들에게 근심을 주게 되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치료에 장애가 된다. 아동들은 형사절차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에서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는 부담이 되며 동시에 아동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넓은 법정, 높은 곳에 위치한 법관석, 격리된 증인석, 법복의 착용, 다수의 방청객 등은 아동증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아동은 가능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받는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공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면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측 반대신문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거나 그 밖에 피해아동의 법정신문이 불가피한 때에는 피해아동을 법정으로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피해아동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책이 필요하다.

아동을 아무런 준비없이 절차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법정에 오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된다. 아동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법정출석을 준비하는데 있어 별도의 시간과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의 법정출석의 준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절차의 교육, 학대와 증언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감소,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의 가능성 제고 및 아동기억의 향상과 암시성(suggestibility) 감소라는 효과가 있다.

아동 피해자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피해경험과 폭력의 목격이 아동과 아동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아동 학대의 전반(dynamics of child abuse)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은 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의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사들은 아동이 피해자와 목격자로 관련된 사건들에 우선권을 주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며, 불필요한 지연과 연기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판사들은 검사나 변호인이 아동의 연령

에 맞는 언어를 쓰도록 하고, 아동의 집중력과 체력에 맞도록 신문과 증언을 조절하고, 아동의 증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언 보조물(testimonial aids)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아동의 발육단계와 필요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는 법정신문을 위하여 출석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별도의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기다리게 된다. 그 경우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심리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방청객을 퇴정시키기까지 피해자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므로 피해자 자신으로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대기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정대기실은 마련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위안이 될 것이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아동이 편안히 대기할 수 있지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증인이 기다리는 장소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여부, 공소취소 및 타관송치 등의 처분취지를 고지 받음으로써(형사소송법 제259조)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알권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후에는 공판기일, 피고인의 구속여부 또는 공판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증거제출, 피해자의 진술권 행사, 증인신문준비 및 배상명령 신청 등 이익실현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판절차에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일정 통보(수사절차의 진행과정, 공판기일, 공판 절차의 진행, 공소취소나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결과 등)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송 진행 중이거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보복의 두려움, 가해자 출소 후 재 피해에 대한 우려이다.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위협감 등은 피해자의 일상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된다. 특히 스스로를 갑작스러운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공포 자체가 피해의 극복을 어렵게 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가석방, 형 집행정지, 형기만료 등과 같은 가해자 신변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가해자의 신변변화의 통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폭력 가해자나 참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다른 권리실현과 사후구제절차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제반권리 및 피해자 조력기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고지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 9월 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지원담당관제도’, ‘피해자지원실 설치’, ‘피해자상담 전용전화 설치’, ‘피해자통지제도’, ‘민간기구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지원’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 경찰병원을 제외하고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275개소의 병원과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7개 긴급의료지원센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검찰청의 ‘범죄수사및공판관여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대검예규제290호, 강력 61100-413)에 성폭력 피해자 담당의사 조사시 서면조사를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피해자 담당의사의 공판정 출석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의사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범인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아동 자신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는 것이다. 아동 피해자들이 관련된 사건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절차에서도 범죄로 인한 아동

의 피해를 치유해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문제, 가정문제, 아동복지문제 등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가족, 경찰, 검사, 의사, 변호인, 아동보호기관, 가정법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과 사람들이 관련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분야중 사자간의 상호 효율적인 대화와 협력은 전문가나 아동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은 우선 형사절차에서도 아동이 받게 되는 면접횟수의 감소,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의 감소, 민·형사사건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질의 강화, 가족과 아동보호기관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 하는 등의 시너지효과를 생기게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간의 지식과 정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피해사건의 처리의 질과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간의 협력이 필요에 따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피해자 및 목격자 관련사건에 대해 관련분야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등에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 법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소년비행 동향

- 2005년 일본 범죄백서를 중심으로 -

김 철 호

(안산보호관찰지소장)

일본의 소년비행은 어려운 치안정세와 함께 국민 불안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일본은 소년비행 방지와 함께 차세대를 담당하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2005년 일본백서는 「소년 비행」을 특집으로 하여 최근 소년비행의 동향과 자질 등을 분석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내 및 사회내 처우 실태, 소년법 개정후의 중대 소년사범 실태와 처우를 소개하였다. 이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서술하여 우리나라 소년비행 예방 대책에 참고 하고자 한다.

1. 2004년 범죄동향 등

가. 형법범

형법범 인지건수는 342만 7,606건(전년대비 6.0% 감소), 일반 형법범(교통관련 과실을 제외한 형법범) 인지건수는 256만 3,037건(동 8.1% 감소)으로, 2년 연속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절도가 형법범 인지건수의 57.8%를 차지해 절도와 교통관련 과실이 형법범 인지건수의 83.0%를 차지한다. 절도의

인지건수가 전년대비 25만건 가량 감소해 이것이 전체의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절도를 제외한 일반 형법범 인지건수는 전년대비 4.8% 증가).

형법범 검거인원은, 6년 연속으로 전후 최다를 갱신해 128만 9,416명(전년대비 1.5% 증가)이 되었다.

검거율은 최근 감소경향에 있었지만, 2002년 이후 약간 회복해 형법범 전체로 44.7%(전년대비 3.4% 증가), 일반 형법범은 26.1%(동 2.8% 증가)이다. 절도의 검거율은 해마다 회복되고 있지만(2004년 22.6%), 절도를 제외한 일반 형법범의 검거율은 감소 경향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동 37.8%).

살인의 인지건수는 1,419건(전년대비 2.3% 감소), 검거율은 94.6%(동 0.5% 증가)이고, 강도의 인지 건수는 7,295건(동 4.8% 감소), 검거율은 전년대비 같이 50.3%, 사기의 인지건수는 8만3,015건(동 37.7% 증가), 검거율은 32.1%였다.

나. 범죄자의 처우

검찰청 종국 처리인원은 218만 3,811명이고,

그 중 공판청구가 6.8%, 약식명령 청구가 34.5%, 기소유예가 44.8%였다. 공판청구 인원은 199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가정·간이법원의 통상 제1심 중국 처리 인원은 9만 3,658명, 그중 양형은, 사형 14명, 무기징역 125명, 유기징역·금고 9만 453명이었다.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은 74만 9,279명이었다.

행형시설 수용인원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7만 6,413명이고, 수용율은 105.9%(전년대비 0.1% 증가)이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7만 5,289명(수형자 6만 2,641명, 미결 구금자 1만 1,686명, 그 외 962명), 신수용자는 3만 2,090명(전년대비 2.3% 증가)이었다.

보호관찰 신규접수 인원은 6만 8,194명이고, 그중 가석방자가 1만 6,690명(전년대비 5.7% 증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가 5,251명(동 2.2% 감소)이었다.

2. 특집 - 소년 비행

가. 소년 비행의 동향

소년 형법범 검거인원(촉법소년 인원을 포함한다)은 최근에는 대개 20만명 전후로 추이하고 있어 2004년은 19만 3,076명(전년대비 5.2%감)이었다. 동 검거인원의 인구비(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인구 10만명당의 검거인원의 비율)는 1,505.9(전년대비 47.0%)로, 전후 소년비행의 최고 정점인 1975년대 후반보다도 높다.

살인은 62명(전년대비 35.4% 감소), 강도는

1,301명(동27.7%감)이었다.

나. 비행 소년의 질적 분석

비행소년, 비행소년의 보호자 및 소년원 교사 의식조사 결과, 사람의 아픔에 대한 이해력 부족 등의 자질면의 문제, 대인관계를 쌓아 가려는 힘이 약함 등 대인관계면의 문제,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보호자 증가 등 보호자의 문제가 명확해져 있어, 최근 비행소년의 처우상 유의점으로서는

- ①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성을 기르는 처우
- ② 집단 상황을 활용한 처우
- ③ 보호자의 자발적 대응을 촉진 시키는 압력강화 등, 세 가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 비행 소년의 처우

1) 소년 심판

가정법원 중국 처리 인원은 23만 2,936명이고, 처리 구분별 내역은 심판불개시 55.9%, 불처분 19.0%, 보호관찰 17.5%, 소년원 송치 2.3%, 형사처분 상당한 검찰관 송치 3.4%였다.

원칙 역송사건(범행시 16세 이상의 소년이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의 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중국 처리가 된 소년은 총 294명(평성 13년 4월~16년 12월)이고, 이 중 178명(60.5%)이 검찰관 송치 결정을 받았다.

(2) 소년분류심사원의 처우

새로이 접수된 인원은 2만 1,031명(전년대비 8.8% 감소)이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과제로서는 흉악·특이한 비행을 실시한 소년 및 저연령 소년에 대한 자질 감별체제의 충실·강화 등을 들 수 있다.

(3) 소년원의 처우

신입 원생들은 5,300명(전년대비 9.0% 감소)이었다.

소년원의 과제로서는 피해자 시점을 염두에 둔 교육의 충실·강화, 보호자에 대한 압력강화 등을 들 수 있다.

(4) 소년재소자의 처우

새로이 입소한 소년재소자수는 84명(전년대비 23.5% 증가)이었다.

(5) 소년 보호관찰

소년의 보호관찰 신규접수인원은 4만 6,253명이었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 과제로서는 피해자를 염두에 둔 처우 및 프로그램개발, 즉 사회참가 활동의 적극유도, 취업지도 및 지원의 강화, 보호자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라. 소년법 개정 후의 중대 사범 소년의 실

태와 처우

중대사범(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사건) 소년 278명에 대해서, 비행의 실태, 재판,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처우 등을 종단적으로 조사·분석했다. 집단형, 단독형, 가족형, 교통형 등 4개의 비행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4분의 3(211명)이 집단형이었다. 집단형의 특징으로서는 학교에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일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며, 놀이 중심으로 보내는 소년이 대부분으로 폭력에 의해 강함을 과시하거나 기분전환을 하려고 한 결과 중대 사범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3. 마지막

소년비행의 방지 및 비행소년의 선도는 형사사법만으로 완결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분야의 모든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제휴하면서 지역사회와 협동하여 종합적인 비행예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 LSE대학 만하임 범죄학센터를 다녀와서

1. 들어가는 글

이 글은 영국 LSE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대학 범죄학연구소를 7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고 그곳에서의 보고 느낌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7월 중순에 방문한 런던은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다. 뜨거운 햇살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나와는 달리 런던의 사람들은 모처럼의 햇살을 마음껏 즐기려는 듯했다. 잔디밭에서 햇살을 받으며 누워 있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또 우리와 달리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버스에서도 더위에 못 이겨 힘들어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무덥지만 모처럼의 화창한 날씨를 고마워하는 듯 했다.

영국을 방문하고자 한 것은 금년도 연구과제인 자율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영국이 오랜 경험과 다양한 활동을 지닌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이론적 부분이 되는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은 영국에서 1970, 198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상황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덜 매력



전 영 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적인 것으로 만드는 환경변화가 가능하다는 이념에 의존하며, 범죄학이론 중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등과 관련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시민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특별자원경찰은 영국에서 존재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면에서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특히 런던 시내에 있는 LSE대학을 방문하게 되었다.

2. LSE대학 소개

LSE대학은 1894년 헨리 헌트 허친슨(Henry Hunt Hutchinson)이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에 2만 파운드의 유산을 기증한 후 1895년 페이비언협회에 속한 회원이자 부부인 베아트리스 포터 웨브(Beatrice Potter Webb)와 시드니 웨브(Sidney Webb)에 의해 설립되었다. 1896년 7월 281명의 학생으로 정식수업을 시작하였고, 1900년에 런던대학교의 단과대학이 되었다. 현재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LSE대학은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영국 이외의 국가출신이며, 150여개의 다양한 국가

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직원의 거의 삼분의 일 가량도 영국 이외의 국가 출신이었다. 이렇듯 학생과 교직원의 상당수가 영국 이외의 국가 출신인 것은 대학의 명성과 관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대학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의 하나이다. 즉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분야에서 훌륭한 평판을 얻고 있는 대학이다. 2001년에 영국 연구평가에서는 LSE대학의 연구가 200여개의 대학과 컬리지 중에서 제2위로 평가받았다. 또한 학생의 절반가량은 대학원생들인데, 이는 이 대학이 보다 심도있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대학에서 연구했거나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 대학은 상당한 양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런 LSE대학을 방문하게 되었다. LSE대학은 영국에서 유명한 곳 중의 하나인 대영박물관에서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마침 방문한 날은 LSE대학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어서 졸업식 후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졸업생들은 정말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마도 LSE대학이 그만큼 많은 국가에 좋은 평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정문이 있고 한 울타리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우리나라의 일반 대학들과는 달리 LSE대학은 대학정문도 없고, 대학 건물들과 다른 건물들의 경계도 없었다. 대학의 몇 개 건물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어서, 어디까지가 대학

건물인지 한 눈에 알아 볼 수는 없었다. 대학 건물들을 다니다가 레스토랑을 보았다. 아마도 학교 건물인 것 같았다. 나는 그 곳에 들어서서 영국에서 유명한 휘시 앤 칩스(fish and chips)를 먹어 보았다. 영국의 음식 맛이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지만, 푸짐하게 나오는 휘시 앤 칩스를 맛있게 먹었다.

LSE대학 프런트가 있는 건물(Old Building)로 가서 안내를 받았다. 프런트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힘들텐데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대학에 처음 방문한 나로서는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해 주는 안내자로 인해 LSE대학에 대해 좋은 첫 인상을 받았다. LSE대학의 도서관이 있는 건물 앞에서 우연히 전에 연구원에서 같이 생활했던 이기웅씨를 만났다. 8년만에 처음 만났고, 낯선 영국에서 만나서 무척 반가웠다. 이기웅씨는 LSE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며,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기웅씨의 도움으로 대학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손쉽게 검색하고 복사할 수 있었다.

3. 만하임 범죄학센터 소개

LSE대학 만하임 범죄학센터(the Mannheim Centre for Criminology)는 센터로서 구별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사무실 하나에 행정직원이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센터를 소개하는 소책자도 발간되어 있었다. 만하임 센터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하임 범죄학센터는 1990년 11월에 허

만 만하임(Herman Mannheim)을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세워졌다. 만하임 센터는 LSE 대학의 여러 학자들로 구성된 학제간 센터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범죄학 집단모임 중 하나이다. 이 센터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과정, 기금받은 연구, 큰 규모의 회의, 세미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는 주요 연구 회의와 기부금,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만하임 범죄학센터는 현재 범죄학, 정책 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인 연구, 이론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결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센터는 이론문제와 경험적 분석에 동등한 관심을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두 가지를 통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만하임 센터의 노력을 보면서, 올 해의 연구과제인 자율방범활동과도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다. 영국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범죄예방정책에 있어서 연구가 기반이 되는 경향이 보다 강하다는 외국의 논문을 본 적이 있었다. 이는 이론과 경험적 연구, 정책개발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영국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 외에도 만하임 범죄학센터에서는 매주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연구세미나, 영국 범죄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월별 세미나, 서적 발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센터의 활동들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리고 있었다.

4. 나오는 글

런던 시내에 위치하는 LSE대학은 지리적 위

치로 인해 찾아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대학이다. 이 대학에 있는 만하임 범죄학센터는 대학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학생들의 범죄학 관련 강좌는 물론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수행, 세미나, 서적이나 논문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범죄학 관련 분야의 교수, 박사,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외부의 학회나 유사한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성과물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방적인 센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범죄학 연구소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처음 가 본 유럽이라서 둘러 본 모든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유럽의 대학을 방문해서 우리와 다른 대학 건물, 구조 및 주변 환경들을 구경하고, 그 곳에 있는 범죄학센터에 대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롬비아주 보호관찰기관 연수기

1. 들어가는 말

2005년 6월 22일 40일 동안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롬비아주(British Columbia州, 이하 B.C.주)의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사법제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2005년도 필자의 연구과제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분류평가도구 개발’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선진형 사정책제도의 구체적 운영 실태를 둘러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연수 기간 중 둘러본 B.C.주의 보호관찰기관과 처우 프로그램의 내용과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연수국가 및 지역 개요

캐나다의 인구는 31,876,000명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적으나, 국토 면적은 9,984,670km²로 한반도의 45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쪽으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인구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국경지역으로부터 300km 범위의 남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김 양 곤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과,
파견연구원)

영연방 국가로 국가의 원수는 영국의 여왕이며, 정부는 연방제로 10개주와 3개의 준주(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다.

브리티시 컬롬비아주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주로 가장 서쪽에 위치하여 태평양과 접해있다. 주의 관할 구역은 본토(Lower Mainland), 밴쿠버섬(Vancouver Island), 내륙지역(Interior Region), 북부지역(North Region)의 4개 권역으로 나뉜다. 본토

(Lower Mainland) 지역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광역밴쿠버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B.C.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밴쿠버¹⁾는 캐나다 제3의 도시로 캐나다 서쪽 태평양과 맞닿아 있으며, 현대적 감각과 자연의 웅장함이 공존하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은 온화하고 여름은 시원한 기후를 나타내는데 1월의 평균기온은 5℃, 7월 평균기온은 23℃로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여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밴쿠버지역은 우리나라 구에 해당하는 13개의 자

1) 밴쿠버(Vancouver)라는 명칭은 3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위에서 살펴본 B.C.주 4개 권역의 하나로 주도(州都)가 있는 밴쿠버 섬을 말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구도시 밴쿠버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밴쿠버를 포함하여 인접 자치도시를 포괄하는 광역밴쿠버(Great vancouver)로 사용된다.

치시가 하나의 광역밴쿠버시를 형성하고 있다. 인구는 약 220만명이며, 이중 약 35%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민자들 중 74% 정도가 아시아계이며 중국계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인도계가 많다고 한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계 이민자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 이후 밴쿠버가 홍콩 같다고 하여 홍쿠버(Hongcouver)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계 이민자수는 대략 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3. 연수준비과정

이번 연수는 2004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캐나다는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사법시스템과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서는 캐나다가 앞서 가는 측면이 있다는 관련 분야 교수님의 조언과 특히 보호관찰관 동료인 조운오 사무관이 금년 2월부터 B.C.주의 사법교육원(Justice Institute of BC)에서 연수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B.C.주 보호관찰 본부 및 지역보호관찰소 방문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의 교정국의 보호관찰과에 방문 허가 및 협조사항에 대해 5월 20일에 팩스로 서신을 보냈다. 협조서신을 보낸 지 12일 만인 6월 1일 보호관찰과의 책임자인 호웰(Steve Howell, Deputy Provincial Director)씨로부터 기관방문을 환영한다는 뜻과 함께 방문일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달라

는 이메일 답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보냈고, 그 쪽에서 일자별로 구체적인 기관 방문일정을 보내주었다.

4. B.C.주 보호관찰기관 시찰

1) 조직 개요

B.C.주의 보호관찰 업무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²⁾의 소관 사무로 되어있다. 공안부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우리나라의 법무·경찰·소방행정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범죄자의 처우 및 관리업무는 교정국이 담당하는데, 그 대상은 성인범죄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비행 및 범죄소년에 대한 업무는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이하 MCFD)의 소관 업무이다. 우리나라의 비행 및 범죄소년에 대한 관리 업무가 법무부의 소관사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교정국은 사회내처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과(Community Corrections and Corporate Programs Division)와 교도소, 구치소 등의 수용업무를 담당하는 성인보호과(Adult Custody Division)로 양분되어 있다.

성인보호과는 성인 범죄자에 대한 유치(구치소)업무와 2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교정업무(교도소)를 담당한다. 이 외에 연방교도소로 이송되는 수용자의 관리 및 다른

2)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은 공안법무부 또는 공안검찰부 등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공안부로 번역하기로 한다.

주로 이송되는 범죄자 관리 및 연방이민법에 의해 수용된 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외에도 수형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처우 및 필수 프로그램(Core Programs) 등을 운영한다고 한다.³⁾

보호관찰과는 재판과정에서 보석처분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감독업무, 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주립교도소에서 석방된 가석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지역사회에서의 각종 처우에는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코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역에서 보호관찰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Community Corrections Office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에 해당하며, B.C.주 관내에 55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2) 보호관찰 실시 현황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이 가진 재범의 위험성과 이들의 욕구를 평가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위험성/욕구의 평가에 기초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수준을 정하고, 범죄자의 사고와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처우를 실시한다. 또한 공공의 보호와 업무의 대상자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경찰, 법원, 검찰, 범죄피해자 서비스기관, 연방이민청, 주(州)가석방위원회, 연방교정청, 복지부 외 원주민사법기관 및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B.C.주의 2005년 6월 말 현재 각종 사회내처분 등을 받고 보호관찰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만 8,296명이다. 이중 법원의 재판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1만 600명(약 5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재판과정에서 보석처분으로 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4,300명, 조건부 감독형을 선고받은 자가 2,000명 순이다. 이외에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으로 형법 제810조에 의한 집중감독을 받는 대상자가 1,000명, 기소 전에 전환처분을 받고 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230명, 가석방자가 166명, 전자감시를 받고 있는 자가 110명이다. 전자감시는 조건부형과 가석방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병과되는데, 전자감시처분대상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법원이 전자감시제도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담당자는 판사

3) B.C.주에서는 10개의 교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시설의 수용정원은 2,293명(beds)이다. 이들 시설(위치, 수용정원)을 주요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Fraser Regional Correctional Centre(Maple Ridge, 422), Kamloops Regional Correctional Centre(Kamloops, 223), Prince George Regional Correctional Centre(Prince George, 232, 여성 26명 포함), Vancouver Island Regional Correctional Centre(Victoria, Saanich, 294)의 4개는 일반 교도소(regional correctional centres)이고, Alouette Correctional Centre for Women(Maple Ridge, 수용정원, 여성 112명), Ford Mountain Correctional Centre(Chilliwack, 88명), Nanaimo Correctional Centre(Nanaimo, 170명)의 3개는 중간교도소(medium correctional centres)이다. North Fraser Pretrial Centre(Port Coquitlam, 490), Surrey Pretrial Services Centre(Surrey, 199, 여성 65명 포함), Vancouver Jail(Vancouver, 63, 밴쿠버 경찰청의 유치시설로도 이용)은 일반적으로 구치소 기능을 수행한다.

의 전자감시제도의 인식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전자감시 처분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지에 있어야 할 시간 및 외부활동에 참여하여야 할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준수사항으로 부과된다. 전자감시가 부과된 대상자에게는 발목에 전자발신기가 부착되고 대상자의 집의 유선전화기에 송신장치를 연결하여 대상자에 대한 외출상황이 중앙감시통제센터로 통보된다. 전자감시장비는 현재 영국에서 쓰는 장비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정부 관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쉐리(Surrey)시에 있는 중앙감시통제센터(Central Monitoring Unit)⁴⁾에서 총괄하고 있다. 전자통제 방식은 대상자의 주거지 전화기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주거지내 위치 및 외출상황이 이곳 통제센터의 모니터에 표시된다. 모니터에는 대상자가 주거에 있어야 할 시간과 외출해야 되는 상황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상황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경보음을 울려 통제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통제관은 특이 사항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해당 지역의 보호관찰소로 연락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으로 상황을 확인하게 한다고 한다.

3) 기관 방문

보호관찰 본부는 밴쿠버섬의 빅토리아시에 위치하고 있다. 밴쿠버에서 빅토리아로 가는 방법은 페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소요시간은 1시

간 30분가량이며, 밴쿠버 섬의 스와츠베이(Swartz Bay)에 도착한 후 다시 버스 등을 이용 빅토리아로 이동한다.

빅토리아시는 B.C.주의 주도(州都)로 주의사당을 비롯한 각종 주정부 청사가 있다. 주 정부 기관들은 빅토리아 시 내항(Inner Harbour) 안쪽의 Government St. 및 Douglas St.가에 밀집해 있다. 보호관찰 본부를 포함한 교정국의 주요 사무실은 Douglas가 1001번지에 위치한 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B.C주 보호관찰의 총책임자인 Steve Howell(Deputy Provincial Director)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프리젠테이션방으로 이동하여 B.C.주의 보호관찰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현황설명은 Howell이 직접 하였으며, 같은 층에 있는 교정시설을 총괄하는 Provincial Director도 소개 받았다.

본부 외에 밴쿠버 서부보호관찰소, 밴쿠버 동부보호관찰소 등을 방문하였는데, 사무실이 모두 도심의 일반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의 경우 일부 보호관찰소 등의 관공서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그렇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사무실은 모두 상가의 2층에 있었는데, 동부보호관찰소의 경우 전체 면적은 대략 150여평 남짓, 사무직원을 제외한 보호관찰관 모두가 개인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사무소의 현관에 해당하는 곳에는 사무직원이 근무하는 공간과 대상자 대기실이 있었으며 출석한 대상자는 함부로 사무실로 들어갈 수 없으며, 대기실에 있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의 호출이

4) 중앙전자감시센터(CMU)는 쉐리 지역의 Surrey North Community Corrections Office 안에 있다.

있으면 사무공간을 지나 담당관의 방으로 가서 면담을 하였다. 보호관찰관의 사무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문화적 차이도 있겠으나 대상자와의 면담에 있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었다. 우리의 보호관찰소 공간 구분은 일반사무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상자와의 면담환경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었다.

보호관찰관의 개인 사무실은 모두 창문을 끼고 외곽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가운데 공간은 코어프로그램 등의 진행을 위한 집단상담실과 직원의 휴게공간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에 근무하는 보호관찰관의 10명이 약간 넘었으며 관리대상자는 5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석처분으로 풀려난 대상자만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경우는 사례가 100여건이 약간 넘는다고 하였다. 보호관찰관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우리와 같이 보호관찰소간 인사이동의 개념은 없다고 한다. 보호관찰관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지역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방식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에게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4) 가정폭력프로그램의 참관

밴쿠버 동부보호관찰소 방문 중 코어프로그램의 하나인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Respectful Relationships Program)의 한 세션을 참관할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참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상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12명으로 모두 남성으로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였다. 참가 대상자의 인종별 구성은 흑인이 2명, 아시아계가 2명, 히스패닉(멕시코계)이 2명, 나머지는 모두 백인이었다. 프로그램은 오후 2시에 시작하여 2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두 명(남자와 여자)의 보호관찰관에 의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JIBC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진행자를 남자와 여자 공동으로 하게 한 것은 프로그램 실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성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는 없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나누면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활발한 집단 분위기는 필자의 경험 상 우리의 수강명령 집행현장에서는 자주 경험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도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대상자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표출하는 문화적 분위기 등에서 그 차이가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이 또한 부러운 경험 중의 하나였다.

5. 현지에서의 생활

출국 전 숙소 등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였으며, 주로 이용한 사이트는 다음 카페의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http://cafe.daum.net/ourvancouver)의 ‘거주지 광고’ 코너와 조선일

보의 밴쿠버 판인 ‘밴쿠버조선’(http://www.vanchosun.com)의 ‘렌트/홈스테이’ 장터 코너를 이용하였다. 이곳은 현지 유학생들 및 동포가 운영하는 민박집 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곳이다. 필자의 경우 숙소는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공항에서 비교적 가깝고 도착 당일 민박집까지 픽업이 가능하다고 소개된 민박집으로 결정하고 이곳과는 전화로 계약을 하였다. 이후 숙소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상황을 보며 결정하기로 하였다.

밴쿠버에는 우리나라 교포들이 홈스테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많으며, 장소와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나 보통 한 달 비용이 C\$700~850정도 든다.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혼자 기거할 경우 홈스테이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수기관의 위치와 가까운 곳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경전철((sky train))이 운행되는 곳이라면 30분 이내에 시내 접근이 가능하므로 굳이 번잡한 시내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운타운에서 멀수록 비용은 다소 저렴해진다. 메트로타운역 부근에 한국인이 운용하는 민박집이 많다. 필자도 처음 민박집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다 이곳으로 옮겨 귀국 전까지 생활하였다.

광역밴쿠버의 중심 상권은 밴쿠버시의 다운타운과 버나비시의 메트로타운이며 이곳에 대형 쇼핑몰이 있다. 필자가 방문한 기간 중에 캐나다의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일(7월 1일)인 Canada day가 있었는데, 이날을 전후하여 메트로타운 대형 쇼핑몰에서는 대략 보름여 기간 동안 할인 행사가 계속되기도 하였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버스, 경전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1, 2, 3 구간으로 나누어지고 일반요금 기준으로 1구간 C\$2.25, 2구간 C\$3.25, 3구간 C\$4.25인데, 오후 6시 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구간에 관계없이 1구간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편의점에서 월 단위 정액권이나 10매씩의 할인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경제적이다. 경전철을 스카이트레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철이 주로 지하로 다니는 것과는 달리 여기 경전철은 고가로만 다니기 때문이다. 전철 탑승시 표를 검사하는 사람은 없으나 무임승차로 적발되면 벌금이 크다고 한다.

승차권 하나로 버스와 전철 및 씨버스(seabus)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승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동하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승차하면서 운전기사에게 ‘Transfer’라고 말하면 환승표를 준다. 승차권 하나의 제한시간은 90분으로 이 시간 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Sea Bus는 밴쿠버에서 북 밴쿠버 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밴쿠버 대중교통에 대한 안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www.translink.bc.ca)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처음 가는 지역을 모를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단의 ‘Trip Planning’ 코너에 들어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버스노선과 소요시간 및 시간표 등을 자세히 알려 주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도 처음 가는 지역인 경우 이곳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았다.



독일 등 유럽경찰 체험기

1. 마음가짐과 준비상황

경찰생활을 하면서 소위 선진국 경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일제 식민 경찰의 잔재를 그대로 남긴 채 출발한 우리나라 국립경찰, 그 태생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선진국 경찰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방안’ 과제를 연구하면서 외국 경찰의 사례

를 수집할 목적으로 떠나는 유럽여행이었지만, 보통 경찰조직 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가며, 이미 잘 짜인 스케줄 속에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오는 여행과는 사뭇 달랐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유학을 하고 있는 지기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녀야 하는 여행이었다. 항공과 유로스타와 유레일패스를 예약하고 하하 하나 계획한 일정에 따라 각 시각표까지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

과제연구란 것을 떠나 어쩌면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어릴 적 두려움이 앞선 여행이었다. 모든 예약과 여행일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구하고 예약을 했다. 그 이전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느껴지는 중압감은 ‘도전’과 ‘서바이벌’이란



이 동 환

(부산동부경찰서 경정,
파견연구원)

단어를 떠올려야 했다.

2. 어수선한 영국경찰, 미소는 잃지 않았다

영국은 경찰청에서 파견한 주재관이 없다. 경찰청 외사를 통해서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7월에 발생한 런던테러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를 친절히 제공하거나 인터뷰할 기관과 경찰관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떠났다. 공항에 내려 숙소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생전 처음 혼자서 목적지를 찾아야 된다는 불안함에도 차창 밖의 영국 경찰의 활동 모습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첫인상은 런던 테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지 않는 경찰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내로 접어들어 혼잡한 거리를 지날 때는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정복경찰관들이 순찰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영국하면 무장하지 않는 경찰관들의 순찰을 떠올렸는데 테러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

숙소인 빅토리아코오치스테이션 근처의 민박집에 짐을 풀자 말자,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갔다. 주변 지리도 익힐 겸, 그리고 나름대로 변화가인 빅토리아코오치스테이션과 기차, 전철역이 있는 거리로 나갔다. 전

철역 앞에는 이동과출소로 보이는 봉고 경찰 차량이 상주하는 것 같았고, 그것을 기점으로 무장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국내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정된 경찰력으로 보통 때보다 강화된 근무를 어떻게 소화할까 해서 거리에 있는 경찰관과 인터뷰를 했다. 퇴직 경찰관을 재임용하고, 런던이외의 경찰관서의 경찰관들이 런던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이 되어도 그러한 ‘행정응원’제도는 꼭 있어야 하겠다고 느꼈다.

다음 날은 빅토리아코오치스테이션 근처의 경찰서를 찾았다. 그 전날 야간에는 우리나라 경찰서와는 달리 정문에 셔터가 내려져 있었는데, 야간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셔터가 내려져 있고, 용무가 있는 사람은 밖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출입을 한다고 하였다. 야간에 사무실에 간간히 불이 켜진 걸로 봐서 야간 당직체제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경찰서 입구는 하나로 되어 있었고, 경찰관 한명만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순찰경찰관들이 순찰 중 지득한 치안정보를 어떻게 보고하고, 보고한 것이 어떻게 관리되며, 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경찰과 같은 의무적인 보고 건수는 없지만, 순찰 중 지득한 치안정보에 대해서는 전자 내부망을 통해 보고, 관리, 배포됨을 알 수 있었다.

경찰서장 등 참모들과의 면담요청을 했지만, 테러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사전에 예약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관련정보가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템즈강변에 있는 국회의사당 출입문에도 여자, 남자 경찰관이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접근하여 말을 붙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 보는데 무척 친절하였다. 거리에서 만난 경찰관과는 달리 관광객을 많이 접하는지 사진촬영에도 응했다.

특히 그 경찰관들은 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템즈강 ‘런던아이’란 도시 전경 관람소에서 경비로 보이는 사람들이 소지품을 아주 철저하게 검색하고, 의심되면 가보관시키고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기관단총을 든 경찰관들이 늦은 시간인데도 순찰을 돌았다.

런던을 벗어나 스탠포드 대학가를 가보았는데, 그곳에서는 경찰관을 한명도 만나지 못하였다. 대학가란 특성도 특성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 곳에서 유학을 하는 경찰청 직원들이 알려주었다. 거리 곳곳에는 강도와 소매치기를 경고하는 경고판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많이 있었다. 유로스타가 출발하는 역에서는 생각만큼 대테러 방비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항공편을 탈 때보다 간단한 검색이 이루어질 뿐이었고, 국경을 통과하는 것치고는 시시할 정도였다.

3. 마약과 흥등가가 적법인 네델란드, 경찰은 거칠었다

네델란드에서 독일 뮌헨으로 향하는 야간열차를 타기위해 뷔르셀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치게 되었다. 뷔르셀에서 머무른 다섯 시

간 동안 경찰관과 경찰차량은 보지 못하였다. 전차와 자전거, 자동차 등등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행인들은 굳이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거리를 횡단했다. 암스테르담은 일부 마약과 성매매가 허가된 곳이라 해서 흥등가를 관찰하고 싶었다. 그러나 야간열차 예약하는 과정에 열차를 놓치고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학생 배낭 여행자들의 숙소를 마련해주는 바람에 흥등가를 살살이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초입 부분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경찰차량과 경찰관을 발견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러자 여자경찰관중 1명이 거칠게 내 몸을 밀치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한국에서는 경찰관임을 밝혔지만 접근 자체를 거부하였다. 경찰들은 흥등가 초입부분에 차량을 대기시키면서 밖에 나와 있었지만, 검문검색을 하거나 무엇을 관찰하진 않았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그랬다. 무장은 권총이었다.

4. 아우구스부르크 경찰, 독일경찰의 단면을 체험하다

아우구스부르크는 뮌헨에서 이체(고속열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다. 독일에서 경찰법 관련 유학을 하고 있는 이성용 경감의 도움으로 아우구스부르크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었다. 우선 경찰서 안에는 우리 경찰이 관할하는 인구보다 적은 도시에서 우리 경찰관수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경찰관들이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비 경찰관 직원이 많았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42시간, 4교대 근무였다. 초과근무를 할 경

우에 초과수당을 받느냐고 물었다가 낭패를 보았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특정 수요에 맞추어 경찰서장이나 각부서장이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있어도 결국은 4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근무를 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휴일, 휴가를 부여 4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였다.

주취자문제 등과 관련하여 유치장을 시찰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경찰서 유치장은 우리나라 교도소 1인실과 같은 형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치된 CCTV도 없고, 감시는 유치장 근무자가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문에 붙어 있는 쪽문을 열어 보는 정도였다. 문은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철문이었다. 주취자 처리의 우선은 응급기관이 처리한다. 그래도 처리하기 곤란한 주취자는 유치장에 유치(아우구스 부르크 경찰관은 일정시간 강제적인 억류가 가능하고, 24시간 내까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풀어 주는 시스템)하여 수갑을 찬 채로 깎 때까지 복도에 마련된 수갑 꼬치구이(벽에 돌출되어 있는 파이프 같은 것)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생각해 보지도 못할 방안이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일부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유형은 없다고 하였다.

경찰의 계급구조는 우리보다 엄청 복잡한 것 같았다. 하급직 경찰관(순경~경사): 교육생부터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중급직 경찰관(경위~경감)은 경찰대학생, 초임경위 파출소 부소장급, 임용된지 3~4년된 경위급과 파출소

장, 임용된지 10년 전후 경위급과 파출소장급 순찰팀장, 경감급 또는 경찰경력 20년 전후 중급간부급 등 5단계였다.

고급경찰관(경정~총경급)은 초임경정, 고참경정, 초임 총경 등 3단계이고, 부서장급(대도시 경찰서의 서장, 기동대장, 경찰국장)은 3단계였다. 초임총경을 50대에 이르려면 대략 경찰대학을 나오고 중급간부부터 시작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대학은 선택적 사항인데, 우리 같은 교육열이 아니라 고졸자 입직이 보편적인 독일의 경우, 경찰대학을 나오면 주에 따라 고속 승진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한다. 순경부터 근무하다가 경찰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 관할의 방문한 지구대의 책임자도 나이가 지긋해 보였는데, 초임부터 들어와서 고속승진을 한 사례라고 하였다.

그러나 12~10단계 계급체제지만 우리와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았다. 같은 계급이더라도 승급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승진은 보수상승의 의미만 있다고 한다. 우리(나, 통역 이성용 경감)를 안내한 경찰관은 노란별 세 개(지구대장이 노란별 네 개, 상황실장이 노란별 네 개)로 우리나라의 공보관이자 주요 참모였는데 서장하고도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각 부서장과도 격의 없이 보였다.

특이한 것은 공보관이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안내하려고 하면서 갑자기 모자와 권총을 차고 등장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경찰관이 부서 밖으로 외근할 때는 무슨 일을 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외근 시에는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총을 휴대하고 정모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경우 하위직에게만 그러한 의

무가 부과되어 있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그 지휘권은 서장에게 있다. 행정과 수사에 대해 서장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면담한 서장은 그렇다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지휘할 수 있으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는 표현을 썼다. 수사경찰은 중앙수사국의 지휘도 받는다고 하였다.

검찰과는 대등협력관계였다. 법학을 중시하는 독일 분위기상 거기에서도 상당히 법조인들이 경찰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면담한 서장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경찰을 직접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세 번 강조하였다.

경찰서 조직의 지원부서는 거의 민간인 직원이고, 경찰관은 대부분 법집행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지구대나 파출소 등과 같은 행정경찰 안에서도 간단한 사건(마약소지, 경매사기 등등)은 직접 수사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집단행동에 대한 경력 배치는 내가 본 나치와 나치즘 집회현장에서는 우리와 거의 동일한 경력이 동원된 것을 목격했다. 특히 총기를 든 특공대와 진압경찰이 이채로웠는데 침예한 시위라서 그런 것으로 보였다.

5. 프랑스, 이탈리아 경찰

프랑스에서 경찰청 주재관과의 일정 차질로 기관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특이한 것이 보조경찰관제도가 있었다. 청

년 고용증진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 근무 중 경찰관, 군인경찰, 직업군인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꽤 높다고 한다. 근무시간은 4일 근무 2일 휴식인 2/4제가 정착되어 근무하고 있고, 주 40시간 30분씩을 근무한다고 하였다. 새로이 적용되는 주 35시간 근무제로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진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경찰관 인력운용에 큰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경찰관의 2/3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노동 3권을 모두 인정받으나, 단체 행동권은 제약되고 있다. 대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당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탈리아 경찰. 같은 거리에 전혀 복장이 다른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어, 물어보니 한 부류는 길안내 등을 하는 경찰과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들이 각기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복장, 모자 착용, 장구 등이 전혀 달랐다. 길을 안내해주는 경찰관이 우리식의 근무복 복장이었고, 단속 경찰관은 스티커용지 편철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고, 모자는 기마병식의 모자로 복장 상 훨씬 품위 있어 보였다.

귀국하기 하루전 시간적 여분이 남아 나폴리 쏘렌토 부근의 포지타나란 곳을 여행했다. 호텔은 책자에 있는 것을 믿고, 예약을 하지 않고 무작정 갔다가 노숙자가 될 뻔하였다. 기후는 밖에서 잘만 했는데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경찰에서 유일하게 자주 공고하는 광고문이 걱정되었다. 도둑 조심, 소매치기 조심, 강도조심 등 그러한 경고판을 자주 보면서 밖에서 잘 엮두는 나지 않았다. 포지타나란 곳은 절벽을 따라 집과 호텔 등 도시가 형성된 소

도시다. 호텔을 찾기 위해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내려갔지만, 적당한 호텔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화장실 볼 일을 보기 위해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파출소 같은 것을 발견하였다.

무작정 들어가니 무전기 소리와 무전기 꽃을대가 우리나라 지구대 모습과 비슷하였다. 규모는 작고 사무실엔 온통 서류뭉치가 어지럽게 꽂혀 있거나 쌓여있었다. 경찰관 1명이 무슨 서류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소개 해준 곳은 유스호스텔이었다. 익숙하지 않는 도미토리형식의 유스호스텔에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지냈지만, 경찰관이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은 추억은 특별한 것이었다.

6. 맺음말

언어문제와 해당 국가안의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독일 이외에는 실질적인 자료수집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지에서 경찰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의 실상을 듣게 된 것은 무척이나 도움이 되었다. 단체방문이나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도움 없이 나아간 해외 현지 여행은 두려웠지만 또 한편으론 도전정신을 키워준 것 같다. 다음엔 필요하면 어디든지 혼자서 가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도 수확이었다. 현지에서 구하지 못한 연구관련 자료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입수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 독일에서 정보처리 과정을 한 눈에 관찰한 것은 이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학 술 행 사 ●

◆ 2005년 하반기 형사정책세미나

형정원은 12월 20일(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신구속과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주제로 2005년 하반기 형사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진수 형사사법연구센터장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이흥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동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정행철 동의대 법과대학장, 윤웅장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해 전국의 형법·형사소송법관련 교수와 실무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논문발표

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태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형사사법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들이 미국의 형사절차의 특징을 살펴보고 ‘무죄추정원칙과 인신구속’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도 무죄추정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수사에 있어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원칙이 구속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원리로 이해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해 지고 예컨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불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우리 형정원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이 구속을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올바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신구속

제도와 무죄추정원칙’이라는 주제로 추계형사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형사소송법학자인 롤란도 카르멘(Rolando V. Del Carmen, 샘휴스턴 주립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미국의 인신구속 제도”에 관하여 발표를



[사진설명] 형사정책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 카르멘 교수

들었다. 카르멘 교수는 미국의 로스쿨 및 형사사법대학에서 형사법과목의 기본교재로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actice”의 저자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그 번역본이 출판된 바 있다. 카르멘 교수의 방한초청은 지난 8월 형정원과 샘휴스턴주립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체결에 따른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카르멘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을 하였고 전문통역인이 발표와 토론을 보조하였다. 카르멘 교수의 강연에 이어 형정원의 이진국 연구위원이 “인신구속과 무죄추정 원칙”에 관해 발표를 하고 손동권 건국대

교수와 김정한 변호사가 토론을 하였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무죄 추정원칙에서 도출하는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의 구속관련 규정에 따른 구속을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구속 기간이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의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를 정하는 법칙으로 재판단계에서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미나 개요

- 제1주제 :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 발표 : Rolando V. del Carmen (미국 샘휴스턴 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2주제 : 인신구속과 무죄추정원칙
 - 발표 :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손동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정한 (변호사)

◆ 마약연구과제 정책토론회

형정원에서 협동연구로 수행중인 마약범죄 연구과제(연구책임자: 김은경 센터장)의 수행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학계·실무계·정부부처·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가 12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한양대학교 한동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어 5개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실무계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지정토론자와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토론회 개요

△ 주제발표

-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와 수요감소 전략(강은영 전문연구원)
-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모형(김은경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장)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 의료체계 협력시스템 활성화 방안(황만성 부 연구위원)
- 마약류 범죄통제를 위한 예산정책(권오성: 한국 행정연구원)
-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김한균 전문연구원)

△ 지정토론자 : 조기룡(안양교도소 분류과장), 이한덕(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의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오동열(관동대학교 정신과 교수), 김형중(식약청 마약관리과장), 김명철(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원득(국무조정실 사회총괄과장), 이철희(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부 검사), 서윤호(단국대 법학과 교수)

◆ 조직폭력연구 워크숍

정부의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대검찰청 수탁연구과제인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폭력연구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수도권지역 조직폭력 전담검사 초청형식으

로 12.23(금) 행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워크숍에는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정윤기 부장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조직폭력전담 검사 6명이 초청되었으며 행정원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외에 김지선 부연구위원, 김지영 부연구위원, 박경래 전문연구원, 류혁상 부부장검사, 강석구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조병인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조직범죄의 변화 △건설 등 경제 분야 조직폭력 실태 △금융 및 벤처 분야 조직폭력 실태 △조직폭력 피해자 보호의 현황과 대책 등에 관한 참석자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대회

행정원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와 공동으로 2006.1.17(화)부터 18(수)까지 부산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대강당에서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학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중국 형법학회장 및 일본 형법학회에서 5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 발표자로 23명이 선정되어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주제는 ‘형사사법의 정비방안’으로 이태훈 원장이 행사전날의 만찬 및 개회식 축사를 할 예정이며 신동일 부연구위원과 이천현 부연구위원이 각각 “전문증거에 대한 사개추위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그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박미숙 박사, 탁희성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연구사업수행 ●

◆ 연구결과 평가

2005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고 연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절차의 일환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평가는 연구과제별로 지정된 내부평가위원(2명)과 정책수요기관인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2명)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검토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연구진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고서를 완성한 다음 인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결과평가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결과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형사사법기관 정책자문

정부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고 형사사법분야의 수요자 만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자문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요청에 따른 법률(안) 검토 및 의견회신, 정책토론회 개최, 공청회 참여, 자문회의 참석, 외국 정책연수 참여 등을 통하여 정부의 형사사법개혁을 적극 지원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검토 및 의견회신

- ‘검찰청법’ 제53조 개정안
-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검찰청법 제8조 개정안
- △ 경찰청 ‘혁신위원회’ 회의 참석
 -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 11.15(화), 12.5(화), 경찰청
- △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 정책연수 참여
 - 황만성 부연구위원 : 11.27(일)~12.5,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 △ 정책과제분석관련 회의 참석
 -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 12.7(월), 청와대 정책실, 정책기획위원회
- △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처우합리화 정책 토론회 개최
 - 김은경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장 : 12.7(수),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 △ 테러자금조달억제법(가칭)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
 - 도종진 부연구위원 : 12.7(수),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 △ ‘행형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자 참석
 - 이천현 부연구위원 : 12.22(목), 변호사회관
- △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토론자 참석
 - 전영실 연구위원, 김지선 부연구위원 : 12.23(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 정부 4대 폭력 대책회의(11.4. 금) 및 대검찰청 조직폭력 대책단 회의(12.27. 화) 참석
 -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 2006년도 국외 학술정기간행물 구독신청

2005년 현재 구독중인 정기간행물의 중요도 및 직원의 희망신청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 외국 정기간행물을 구독기로 결정하였다. 구독을 신청한 정기간행물은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등 총 95종으로 2005년도에 비해 영미와 일본에서 발간된 13종의 간행물이 증가되었다. 형정원은 국내 유일의 형사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에 필요한 관련도서 확

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정책관련 학계, 실무계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 2005년 제2차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의

형정원의 2005년도 연구사업 및 경영혁신 실적을 보고하고 2006년도 연구사업추진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회의가 이태훈 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필동의 ‘한국의 집’에서 12월 20일(화) 개최되었다.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8명)과 연구사업심의위원(4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자유토론을 통해 연구사업 추진 및 연구원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형정원에서는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최인섭·장준오·최영신·연성진 실장, 정진수·김은경 센터장, 송기오·류혁상 부장검사, 이진국 연구기획위원, 김지선 연구조정담당, 신동일 정보화위원이 참석하였다. 회의에 이어진 만찬에는 하반기 형사정책세미나 발표자인 미국의 롤란도 뷔 텔 카르멘 교수가 특별손님으로 초대되어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을 즐기면서 자문회의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형정원의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17명)**: 강동범(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대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준호(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화수(경기대 교정학과 교수), 노성호(전주대 법정학부 교수), 민수홍(경기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상기(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박순진(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기현(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이동원(광주대 법정학부

교수), 이순래(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영근(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장영민(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정현미(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조균석(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조은석(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하태훈(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 연구사업심의위원회(7명): 김성돈(성균관대 법대 교수, 법무부 형법개정위원), 조준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 정운수(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조은경(한림대 심리학과 교수, 한림융합심리연구소장), 표성수(금감원 위원, 카톨릭대 법경학부 교수, 변호사), 이영렬(법무부 검찰4과장, 부장검사),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연구·경영 혁신 ●

◆ 학술교류협정 체결

[경희대학교]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전문가 연결망 확장을 통한 형사정책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11.9. 수), 성균관대학교(12.22. 목)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과의 교류협정은 공동연구사업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연구 및 강의 목적의 인적 교류, 학술정보자료의 상호대차 및 간행물 교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 공동 활용 등 연구분야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원은 지난 2003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국회도서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 유엔 마약 및 범죄국, 중국 인민대학교, 중국 사법부 범죄예방연구소, 2005년 미국 샘휴스턴주립대학교 형사사법대학, 법무연수원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

내외 형사사법분야 관련기관과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태훈 원장은 이러한 형사정책연구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양 기관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와의 협정식은 11.9(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김운호 경희대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개회사, 참석자 소개, 협정서 서명 및 교환, 기념품 교환, 인사말씀, 폐회사,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정원에서는 이태훈 원장,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장준오·최인섭·최영신 실장, 김은경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경희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은 행정원 창립 이래로 지속되어 온 인연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행정원 개원 직후 경희대 법과대학교에 재직중이던 이재상 교수(현 이화여대 교수)가 5년간 부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초창기 연구원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2001년 9월 제8대 행정원장으로 취임하여 행정원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4년 9월에는 경희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이태훈 변호사(사법시험 14회, 법학박사)가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혁신경영을 통해 행정원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밖에 경희대 법과대학 졸업생인 신의기·박미숙 박사는 공히 행정원에 16년째 재직하면서 각각 마약범죄 및 형사법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진섭 부장검사(현 대전지검 전문부장검사)가 1997년부터 2년간 연구원에 파견되어 연구원 창립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학술행사였던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다. 금년 3월에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정원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정완 박사가 경희대 법대교수로 임용되었으며, 같은 무렵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박경래 박사가 행정원의 전문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다.

[성균관대학교]

2005년 12월 22일(목)에는 우리 행정원과 성균관대학교 사이에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식은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성균관대 최봉철 법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규상 법과대학장의 협정체결 개요 설명, 서정돈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태훈 원장이 답사를 하고 협정서에 조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정원에서는 이태훈 원장을 비롯하여 연구실장급 간부 5명이 협정체결에 참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서정돈 총장, 정규상 법과대학장, 차동욱 대외협력처장, 최봉철 법학과장 외에 법과대학의 오상현 교수, 박광민 교수, 김성돈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태훈 원장은 답사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성균관대학교의 전통과 16년의 젊은 행정원의 전문연구인력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법학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학문과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정서 체결 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법과대학과 연구사업을 기획 조정하는 행정원 연구·경영국간에 「학연협력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부문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하였다. 협정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법과대학 신축된 건물로 이동하여 400석 규

모의 모의법정과 AV시설이 완비된 최첨단 강의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균관대학교 역시 행정원 개원 당시부터 각별한 인연을 유지해왔다. 연구원 개원 직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와 차종천 교수가 연구실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장준오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국제범죄동향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이며, 법과대학을 졸업한 강석구 박사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생인 민수홍 교수(경기대), 기광도 교수(대구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원범연 부장검사(경주지검 부장검사), 이성칠 사무관(대구보호관찰소), 박성래 교정관(법무연수원 운영과) 등도 연구원에 2~5년씩 재직하면서 연구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 2005년 하반기 경영혁신워크숍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하반기 경영혁신워크숍이 11.17(목)~11.18(금)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 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연수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김지선 부연구위원 사회로 △ 2005년도 경영혁신 성과분석(조병인 연구·경영국장), △ 연구원 「6대 목표 실천방안」에 관한 부서별 발표(각 연구부서장) △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경영혁신팀은 각 부서별로 발표한 「목표 실천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16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이태훈 원장은 국제범죄동향연구실과 마약·조직범죄

연구센터를 우수제안부서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워크숍에 앞서 전직원은 족구 등 체력단련을 실시하여 단합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혁신과제목록

- '형사정책연구'지에 소관분야 현안 '특집'란 마련
- 형사사법현장 실무체험 프로그램 시행
- 촉탁연구원 등 활용(직원채용방법 다양화)
- 통계분석프로그램 강좌 개설
- 지원인력 직무교육 의무시간제 도입
- 체육의 날 부활(직원 재충전 기회 확대)
- 직원의 정년 연장
- 성과보상체계 구축
- 조기퇴직제 활성화
- 행정직 특별연가제도 신설
- 연구보고서 내부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
- 국내외 주요 학회 기관회원 가입
- 학술교류협정체결기관과의 실질적 교류 및 협력
- '변역총서' 출간 지원
- 전자우편체계(E-mailing) 구축
- 연구원 조사연구 DB 자료 판매

◆ 직원근무성적평정절차 개선

연구원의 직제개편에 따른 근무평정체계를 정비하고 '업적평가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연구·경영국 신설에 따른 평가체계 조정 △ 행정직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 근무평정 제외자에 대한 특례조항 정비 △ 상향평가 시범실시 △ 부서장의 복무성적평정에 따른 편차해소장치 마련 △ 기여도 배점확대에 따른 평가지표 조정 등으로, 이를 통해 2004년도 연구회평가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2006년도부터 확대 추진하는 대형공동(협동) 연구사업을 체계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학술단체 기관회원 가입

2005년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정책연구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분야 주요 학술단체 기관회원 가입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 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서울대 신동운 교수),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고려대 배종대 교수), 한국사회학회(회장: 서울대 임현진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동아대 허일태 교수), 한국피해자학회(회장: 한양대 오영근 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원광대 양문승 교수), 한국교정학회(회장: 경기대 김화수 교수), 한국청소년학회(회장: 명지대 오치선 교수), 한국경찰학회(회장: 동국대 김보환 교수),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등 10개 단체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와 아울러 형정원은 형사사법전문가들의 학술모임인 형사판례연구회(회장: 연세대 박상기 교수)의 판례연구활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연구직들의 학회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직급에 따라 연간 1인당 20~100만원 범위내에서 개인의 학회활동 비용(가입비, 연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형사정책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1990년 창간 이래로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온 형정원 학술연구지 「형사정책연구」지가 한국학

술진흥재단 소정의 심사기준을 최종적으로 통과하여 “등재학술 후보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2005.12.30)되었다. 이를 계기로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의 학술 논문투고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내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의 발전 속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제교류협력백서」 창간호 발간

연구·경영혁신팀(팀장: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2005년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통해 얻은 지식·정보·경험의 공유를 도모하고자 「국제교류협력백서」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 해외 장·단기 연수 △ 외국대학·기관방문 △ 국제학술회의 참가 △ 국제연합(UN)회의 참가 △ 해외워크숍 참가 등 출장 및 연수 목적에 따라 총 5부로 나뉘어 편제되어 있다. 앞으로도 계속 발간될 예정인 「국제교류협력백서」에는 외국출장자 및 해외 연수자들이 외국에서 체득한 경험들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향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범죄 및 형사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연구·경영혁신팀(팀장: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2005년도 범죄 및 형사정책동향을 분석한 「범죄 및 형사정책동향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자료집은 연구부서별로 취합하여

매주 열리는 연구운영회의에 보고된 동향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한 후 각 자료에 대한 형사정책적 해석을 달아서 출간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범죄 및 형사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수요를 분석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기관 및 형사사법 분야의 정책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문홈페이지 개편

형정원은 유엔협력사업 등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의 증대에 따라 영문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개편된 영문홈페이지는 2005년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변경된 연구원 표장(엠블럼)과 새로 변경한 영문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연구기관연결망(UNPNI) 가입 연구기관 등 국제형사사법 분야에 형정원의 연구성과와 정체성(Identity)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직 · 인 사 관 리 ●

◆ 연구직 신규채용

연구사업규모 확장 및 연구영역 확대에 따른 우수연구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직 6명을 신규 채용하여 12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신규임용자와 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범죄연구실: 홍영오 부연구위원(연세대, 심

리학)

- △ 형사사법연구센터: 주승희 부연구위원(독일 뮌헨대학, 형사사법), 권수진 전문연구원(이화여대, 형사사법), 이승현 연구원(한양대, 형사사법)
- △ 국제범죄동향연구실: 이정 전문연구원(미국 켈럼비아대학, 국제문제), 이윤미 연구원(중앙대, 심리학)



[사진설명] 연구직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

◆ 2005년도 종무식

형정원은 12.29.(목) 12층 회의실에서 종무식을 갖고 2005년도의 모든 업무를 종료하였다. 이번 종무식 행사에서 이태훈 원장은 연구분야 4명 및 연구지원분야 2명을 ‘올해의 행정인’으로 선정하여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올해의 행정인’상은 연구 및 연구지원 분야에서 2005년 1년 동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직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형정원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제정·시행되었다. ‘2005년 올해의 행정인’ 수상자는 탁희성 부연구위원, 김지선 부연구위원, 도중진 부연구위원, 신동

일 부연구위원, 김병규 3급행정원, 박현숙 직원이며, 부서별 추천과 인사위원회(위원장: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2005년도 경영혁신과제 현상공모 우수부서로 선정된 국제범죄동향연구실(실장: 장준오)과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센터장: 김은경)에 대하여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송년사를 통해 2005년도 경영혁신성과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종무식 후 직원들은 다과회와 부서별 송년행사를 가지며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다.

◆ 해외파견자 복귀, 신규파견 및 연구연가



[사진설명] 이태훈 원장과 2005년 ‘올해의 행정인’ 수상자 (뒷줄 왼쪽부터: 김병규, 도중진, 박현숙, 신동일, 탁희성, 김지선)

2005년 장기해외파견연수자인 신의기 박사와 박미숙 박사가 12월까지 1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연구원에 복귀했다. 신의기 박사는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의 형사사법학과(School of Criminal Justice)에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체류하면서 ‘유엔 국제조직범죄 협약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박미숙 박사는 미국 샘휴스턴주립대학교의 형사사법학부의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면서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프로그램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샘휴스턴주립대학교와의 인연은 행정원에 근무하던 홍남식 교정관(파견공무원)이 2002년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 정진수 연구위원의 방문으로 이어졌고, 2004년 거버(Jung Gerber) 교수, 2005년 까르멘(Rolando V.del Carmen)교수의 답방 강연으로 계속되었다. 박미숙 박사는 이러한 양기관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교두보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실로 지난 8월 행정원과 샘휴스턴대학교 사이에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행정원의 해외파견 연수프로그램은 연구인력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국제적 차원의 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6년도 장기해외파견연수자로 정진수 연구위원이 선정되었으며, 전영실 연구위원은 연구연가(안식년)를 통하여 그간의 연구성과를 돌이켜 보며 보다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

◆ 장기근속직원 해외시찰

행정원은 장기근속직원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최

정구 행정실장과 이용만 직원에 대하여 해외시찰을 실시토록 하였다. 해외시찰은 일정기간(최정구 실장: 12.20~12.29, 이용만 직원: 11.28~12.7)동안 유럽의 유관기관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용만씨는 1991년에 입사하여 그동안 연구지원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었으며 내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 직원 경조사

△ 결혼

- 국제형사사법연구실 이 정 전문연구원: 12.10(토)
- 연구·경영국 안상국 3급행정원: 12.17(토)

△ 부친 고회

- 청소년범죄연구실 김양곤 사무관(제주보호관찰소, 파견공무원): 12.4(일)

△ 시외조모상

- 청소년범죄연구실 김지영 부연구위원: 12.9(금)

◆ 직원 조기퇴직

최정구 행정실장이 16년간의 행정원 근무를 끝내고 2006년 1월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정년을 1년 남겨두고 후배들의 발전을 고려하여 자진용태를 결심한 최정구 실장은 법무부 공무원으로 19년간 봉직한 후 1989년 연구원 창립요원으로 행정원 근무를 시작하여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지

원 분야에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유 관 기 관 소 식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임명

최송화 이사장은 공개모집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9일(수) 임기 3년의 육아정책개발센터 초대 소장에 이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를 임명하였다. 이옥 소장은 재임기간 중 국가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육아와 보육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설치한 공동부설 연구센터이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육아 및 보육정책 연구활동은 물론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평가, 인증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12.2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회의실에서 최송화 이사장 및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협의 회의

이상철 예산관리실장은 12.1(목)~12.2(금) 대천 한화콘도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3개 소관연구기관 예산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원에서는 안상국 3급 행정원이 참석하였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포상

최송화 이사장은 12.7(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05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대상자」를 결정하였다. 포상대상자는 현재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로 각종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연구기관 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표창장 수여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외국의 선진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하는 연수기회도 부여된다. 행정원에서는 정호성 2급행정원과 문관효 3급행정원이 추천되었고 이날 포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12.29(목) 연구회가 마련한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 국무조정실 사업계획간담회

국무조정실 최경수 정책차장은 12.8(목)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관련 심의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장, 연구기획실장, 23개 소관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소관연구기관의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사업추진방향 및 관련내용에 관하여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최경수 차장은 △ 2006년도 연구과제를 정책과제 위주로 편성해 줄 것과 △ 연구성과물이 연중 수시로 발표되어 정부의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연구회 및 23개 소관연구기관에 주문하였다. 행정원에서는

조병인 연구·경영국장이 참석하였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장
임명

최송화 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공식중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하였다. 이들 원장은 공개모집·추천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임명됨에 따라 임기 3년의 재임기간 중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정책형성에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현정택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2005.11.23~2008.11.22)
- 국토연구원 원장 : 최병선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2005.12.6~2008.12.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4차 이사회

최송화 이사장은 12.28.(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 19명과 연구회 관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연구회 및 연구기관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하였다. 행정원의 경우 2006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① 「『정책수요』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 ② 「형사정책연구의 중추적 역할 수행」 ③ 「연구사업단중심의 연구계획 추진」 원칙에 따라 59개 사업추진이 확정되었고 2006년도 예산으로 연구사업예산(정부출연금 기준)이 전년대비 26%, 인건비 8.6%, 건물임차료예산 1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사업비 2억 5천만원도 확보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차 경영협의회

최송화 이사장은 12.9.(금)~12.10.(토) 제주 한화콘도에서 연구회 이사, 23개 산하연구기관장, 기획평가위원회·국정과제연구실무위원회 위원, 육아정책개발센터소장 및 연구회 관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안건으로 APEC 성과와 과제, 2006년도 사업계획 심의결과, 국정과제연구기획사업 연구결과발표 등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간 정책수요만족도 제고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행정원에서는 이태훈 원장이 참석하였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 연구기관
평가단’ 발대식

최송화 이사장은 12.30.(금) 연구회 회의실에서 23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2005년 연구기관 평가단’ 발단식을 개최하였다. 평가단으로 위촉된 평가단장·위원(27명)은 위촉장이 수여받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임무와 일정을 안내 받았다. 연구기관 평가제도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연구결과서’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을 촉진하여 기관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9년에 도입되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자료문의: 02-575-5284

<http://www.kic.re.kr>

[정기간행물]

- 更生保護と犯罪豫防 145호
- 警察學論集 58권 11호
- 法律時報 77권 12호
- 法律判例文獻情報 319호
- 罪と罰 42권 4호
- Jurist 1304호
- 中國刑事法 78호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1 No. 2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0 No. 5
-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 Philosophie 3/2005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5 No. 6
-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Vol. 38 No. 3
-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Vol. 47 No. 4
- Criminal Justice Abstracts Vol. 37 No. 4
-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32 No. 6
- Criminal Law Quarterly Vol. 51 No. 1
- Deviant Behavior Vol. 26 No. 6
-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 49 No. 6
-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ol. 21 No. 4
-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0

No. 12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21 No. 4
-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42 No. 4
- Juristische Ausbildung(JURA) 10/2005
- Juristische Schulung(JUS) 10/2005
-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20/2005
- Neue Justiz 10/2005
-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11/2005
- Police Quarterly Vol. 8 No. 4
- Sociological Quarterly Vol. 46 No. 4
- Strafverteidiger 10/2005
- Theoretical Criminology Vol. 9 No. 4
- Wistra 10/2005
- Zentralblatt für Jugendrecht 10/2005

[단행본]

- Good courts: the case for problem-solving justice/Berman, Greg-New York: The New Press, 2005.
- Illinois pattern jury instructions/Illinois Supreme Court Committee on Pattern Jury Instructions in Civil Cases-Eagan: Thomson, 2005.
- Zur Verurteilungspraxis deutscher Gerichte auf dem Gebiet der Schleuserkriminalität/Steinbrenner, Christian-Wiesbaden: Kriminologischen Zentralstelle e. V., 2005.

-
- California jury instructions: criminal/The Committee on Standard Jury Instructions, Criminal of the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Eagan: Thomson, 2005.
 - Begründung des Völkerstrafrechts auf der Grundlage der Kantischen Rechtslehre/Gierhake, Katrin-Berlin: Duncker & Humblot, 2005.
 - Der Begriff des Angriffskrieges und die Funktion seiner Strafbarkeit/Clemens, Björn-Berlin: Duncker & Humblot, 2005.
 - Die Konkurrenz zwischen dem Strafverfahren und dem anwaltsgerichtlichen Verfahren in gleicher Sache als Beispiel für die Disziplinarverfahren der freien Berufe/Wagner, Tobias-Berlin: Duncker & Humblot, 2005.
 - Komparative Strafzumessung: Ein Beitrag zur Fortentwicklung des Sanktionenrechts/Maurer, Matthias-Berlin: Duncker & Humblot, 2005.
 - Das Unrechtsbewusstsein der DDR-, Mauerschützen/Siekmann, Hanno-Berlin: Duncker & Humblot, 2005.
 - Kann die Einbung in Normanerkennung die Strafrechtsdogmatik leiten?: Ein Kritik des strafrechtlichen Funktionalismus/Schneider, Hendrik-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Das deutsche Markenstrafrecht: Ein Untersuchung des §143 MarkenG unter Berücksichtigung europarechtlicher Einflüsse/Schulz, Jens-Peter-Berlin
 - Die zueignungsdogmatik der §§242, 246 StGB/Börmner, René-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Lustiger Scherz oder strafbarer Ernst?: Missbrauch von Zeichen nach §132a StGB und §§124 ff. OWiG: Zeichenunfug oder sanktionswürdiges Delikt/Bottke, Wilfried-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Das Prinzip des ne bis in idem im europäischen Strafrecht/Mansdörfer, Marco-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Person, Subjekt, Bürger: Zur Legitimation von Strafe/Pawlik, Michael-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Ladendiebstahl und Bagatelprinzip: Eine materiell-rechtliche Abgrenzung/Nugel, Michael-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Die Entwicklung der objektiven Zurechnung/Hübner, Christoph-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Die Wohnung im Recht: I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Wohnungsbegriffs in §244 Abs. 1 Nr. 3 StGB/Krumme, Markus-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Zur tatbestandlichen Handlungseinheit/Keller, Christoph-Berlin:

-
- Duncker & Humblot, 2004.
- §46a StGB-Revisionsfalle oder sinnvolle Bereicherung des Sanktionenrechts?/ Pielsticker, Susanne-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Mental health law/Bartlett, Pete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Courtroom 302: a year behind the scenes in an American criminal courthouse/Bogira, Steve-New York: Alfred A. Knoff, 2005.
 - Zur Strafbarkeit der parteipolitischen Interpatronage in der staatlichen Verwaltung/Lindenschmidt, Christian-Berlin: Duncker & Humblot, 2004.
 - Juvenile justice reform and restorative justice: building theory and policy from practice/Bazemore, Gordon-Oregon: Willan Publishing, 2005.
 - Critical jurisprudence: the political philosophy of justice/Douzinas, Cosras-Portland: Hart Publishing, 2005.
 - Constructing victims rights: the home office, new labour, and victims/Rock, Paul-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Law as a social system/Luhmann, Nikla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Law and economics/Harrison, Jeffrey L.-St. Paul: West Publishing, 2003.
 - Beyond neutrality: confronting the crisis in conflict resolution/Mayer, Bernard S.-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 Community polic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models and approaches/Brogden, Mike-Portland: Willan Publishing, 2005.
 -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drug control, 1909-1997/Bewley-Taylor, David R.-New York: Continuum, 2001.
 - Federal rules of evidence/West Group: West Group, 2004.
 - Police law/English, Jack-New York: Blackstone's Police Books, 2005.
 - American criminal law/Dubber, Markus D.-New York: Foundation Press, 2005.
 - Strafrecht und strafrechtliche Zusammenarbeit in der Europäischen Union/Ligeti, Katalin-Berlin: Duncker & Humblot, 2005.
 - Understanding drugs, alcohol and crime/Bennett, Trevor-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2005.
 - (The) Blackwell companion to criminology/Sumner, Colin-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4.
 - American bioethics: crossing human rights and health law boundaries/Annas, George J.-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Is there an ethicist in the house?: on the cutting edge of bioethics/Moreno, Jonathan D.-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 Pragmatic bioethics/McGee,

- Glenn-Cambridge: The MIT Press, 2003.
- Case studies in biomedical research ethics/Murphy, Timothy-Cambridge: The MIT Press, 2004.
- Criminal justice/Samaha, Joel-Belmont: Thomson Higher Education, 2006.
- Medical ethics today: the BMA's handbook of ethics and law/English, Veronica-London: BMJ Publishing, 2004.
- (The) practical guide to medical ethics and law/Baxter, Chlo -Cheshire: PasTest, 2005.
- Identification: investigation, trial and scientific evidence/Bogan, Paul-London: Legal Action Group, 2004.
- Biomedical ethics/Glannon, Walte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Kidney for sale by owner: human organs, transplantation, and the market/ Cherry, Mark J.-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5.
- 인권과 국제정치, 포사이드, 데이비드, 백산 자료원, 2003.
- 인권과 국제정치: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도널리 책, 오름, 2002.
- 지적소유권법(상,하), 송영식, 육법사, 2005.
- 윤리경영과 형법, 이상돈, 新英社, 2005.
- 일본의 소년보호제도, 법무부, 2005.
-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미국 형법, 서철원, 법원사, 2005.
- 영미 형사사법의 구조, 표성수, 비봉출판사, 2004.

함께 풀어봅시다 통권 제91호(2005년 9/10월호) 정답 및 당첨자

총 30통의 응모엽서 중 정답은 22통으로 정답자 가운데 엄정한 추첨을 거쳐 4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첨자]

- 안양시 만안구 비산동 927-14 김인호
- 인천시 남구 남촌동 651 삼호101-201 이윤희
- 천안시 두정동 342-1 극동 123-1501 박영식
- 진주시 주악동 156-4 (동산한의원) 이옥임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서생활권)을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풍	늘	이		우	연		목
열		음		사		산	림	육
재	생		수	양	대	군		재
	존	경	심		사		사	계
인	권		가	훈		부	계	
산		유		장	물		절	도
인	지	상	정		물	가		지
해		증		절	교		명	사
	대	자	보		환	절	기	

[형사정책연구소식] 투고 안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문제에 대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형사정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격월간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지를 발간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3호, 1/2월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한 내에 원고를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내용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범죄문제 등에 관한 논문 및 제언, 번역자료, 학술동향 등

1. **논단 및 제언** : 소식지인 점을 감안하여 논문이 아닌 사회적 관심과 시사성이 있는 글로서 가급적 평이한 수준의 글
2. **번역자료** :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자료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
3. **형사정책 주요동향** : 국·내외 관련분야의 학계, 실무계 소식 및 최근의 학술정보 등
4. **기타 교양관련 글** : 시, 수필, 실무계의 경험담, 국·내외 연수체험기, 명승지 기행, 영화감상, 취미소개 등

□ 응모자격

1. 형사정책관련분야 석사과정을 마친 자
2. 형사사법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및 연구경력자

□ 원고분량

A4용지 80칼럼 27행으로 5~7매 정도

□ 원고마감

2006년 2월 10일(2월 28일 발간예정)

□ 원고료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지급(단,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한함)

□ 참고사항

1. 소식지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급적 평이한 수준으로 집필
2. 원고는 PC(아래아한글프로그램)로 작성하여 송부(e-mail 송부 가능)
3. 투고자의 연락처를 명기하고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제출

□ 보내실 곳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담당 : 김능검)
전화 : 02-571-0363, 3460-5153
팩스 : 02-571-7488
e-mail : kneky@kic.re.kr
kneky@hanmail.net

학술연구지 [형사정책연구] 투고 안내

학술연구지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 65호, 2006·봄호)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제출 및 게재

-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형사정책관련 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나. 제출된 원고는 당 연구원 관련규정에 따라 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 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다. 원고 집필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형사정책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연구경력자로 한다.
- 라. 당 연구원 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원고는 매호 발간 후 연구원 관련규정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2. 원고 집필요령

가. 논문의 구성

- 1) 제목(국·영문 혹은 국·독문)
- 2) 본문(각주 포함)
- 3) 참고문헌
- 4) 국·영문초록(영문 또는 독문) : A4용지 single space 1-2매 정도 분량(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직책표기)
- 5) 주제어 표기(국·영문)

나. 논문작성 요령

- 1) 한자의 혼용여부 : 국·한문 혼용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안에 넣을 수 있다.

- 2) 주 처리방법 : 각주는 논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 3) 단위의 표기 : I.,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며. 반드시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띄어준다.
- 4) 참고문헌 : 국내문헌, 일본문헌, 구미문헌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일본문헌의 순서는 우리식의 한자발음에 의하여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영미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년도 순으로 구성한다.
- 5)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본문에 표와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명시하며,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우측부터 시작하고, 그림은 하단의 중앙에 반드시 위치하도록 한다.
- 6) 주제어는 본문 맨 뒤에 국·영문으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3. 원고분량 : 원고 집필은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A4용지에 80컬럼 27행으로 15-20매 내외로 하며, 글자는 11포인트 크기로 한다.

4. 투고기간 : 2006년 2월 15일(수)까지
(3월말 발간 예정)

5.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담당 : 김능검)
전화 : 02-571-0363, 3460-5153
팩스 : 02-571-7488
e-mail : kneky@kic.re.kr

함께 풀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 정기국회 때 국정 전반에 걸쳐 하는 주 업무
2. 화목한 부부를 비유하는 새 이름
5. 종이나 철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6. 정치, 도덕, 풍속 등이 쇠퇴해 망해 가는 것
7. 상대팀 홈에서 하는 게임을 ○○게임
10. 우리나라의 한국노총과 같은 다른 노동단체는 ○○○이 있습니다
12. 조선왕조 때 세조가 등극하기 전에 군호
14. 청렴하지 못한 관리(탐관○○)
15. 어진 임금의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
16. 영화를 공개하기에 앞서 상영하는 것
18. 다시 살아난다는 靈鳥(Phoenix)
19. 예전에 재산을 물려줄 때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네 글자
22. 김두한은 ○○의 아들
23. 일한 만큼 받는 대가(월급, 주급, 알당 등)

25.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뉜 ○○국가입니다
26. 충남 서천군 있는 섬으로 1974년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기다란 섬

[세로열쇠]

1. 우리나라 태권도의 총본산
2. 범죄 수사상 지문 등을 감정하여 식별함
3. 그 곳에 본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
4. 자신들 중에 특히 뜨는 사람을 ○○라고 하죠
6. 타는 말의 꼬리털
8. 머리 위의 가운데
9. 특정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
11. 세계 평화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상
13. 옛날 문무 양반의 일반적인 총칭
14. 교만하여 업신여기거나 불량스러운 태도
16. 시조의 창을 위한 기본 박자
17. 각종 협회 등 조직의 최고위직
20. 우리나라에서 중국음식점 하면 우선 ○○○과 짬뽕이죠
21. 정해진 시간외에 긴급으로 전하는 뉴스
24. 손의 동작으로 주고받는 대화

응모요령 : 풀이난의 빈칸을 채운 다음 관제엽서에 붙여 우송하여 주시는 분 중에서 정답을 보내주신 4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 감 : 2006년 2월 10일(금)까지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형사정책학에 관한 본격적 교과서 등장
사법시험 고득점에 든든한 길잡이
국내외의 최신 이론과 자료를 망라한 역작
국책 형사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축약

韓國刑事政策研究院 刊

[제8판]

刑事政策

박 상 기(연세대 교수)

손 동 권(건국대 교수)

이 순 래(원광대 교수)

최근 형사정책학의 비중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서는 형사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업과 수험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범죄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이 형사정책학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세 사람의 저자가 전공분야별로 가장 최신의 이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집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형사정책에 관한 전문·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한 600여건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우리 형사정책학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외국의 최신자료까지 최근의 세계적인 형사정책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571-0363, FAX 571-748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

[개정판]

경 찰 학 개 론

이 황 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 병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최 응 렬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래 유능한 경찰관을 꿈꾸며 전국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경찰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을 위해 우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경찰학개론]을 출간하였다. 우리 연구원의 조병인 연구실장(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초대 경찰학회장) 그리고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가 공동 저술한 이 책은 체제와 내용을 경찰조직의 작동원리와 경찰의 발전방향 및 현대경찰의 변화방향에 맞추어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직 경찰관들의 필독서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책은 총론 6개의 장과 각론 4개의 장을 합하여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편에서는 학습의 기초, 경찰의 조직, 경찰의 인사, 경찰의 활동, 경찰통제 등을 다룸으로써 '자율과 책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경찰조직의 역학관계를 터득하도록 유도한다. 각론 편에서는 경찰의 범죄대응체계를 비롯하여 선진경찰의 필수요건으로 논의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및 경찰의 공공질서 관리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경찰과제인 가상공간의 질서관리(Cyber Policing)를 다룸으로써 현대경찰의 변화방향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571-0363, FAX 571-7488

